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핀란드
면적	338,145 km ² (자료원 : 핀란드 통계청, 2018 기준)
수도	헬싱키
인구	5,521,533 명 (자료원 : 핀란드 통계청, 2018 기준)
민족(인종)	핀족(93.4%), 스웨덴계(5.6%), 러시아계(0.5%), 에스토니아계(0.3%), 로마집시(0.1%), 사미족(0.1%)
언어	핀란드어(87.9%), 스웨덴어(5.2%), 러시아어(1.4%), 기타(5.5%)
종교	루터교(70.9%), 그리스 정교(1.1%), 기타 무신론자 등(26.3%)
기후	냉대기후(북대서양 해류와 발트해, 약 19만 개의 호수의 영향으로 인해 극지방에 인접해 있으나 비교적 온난: 헬싱키 겨울 평균기온 -8℃~-3℃)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Sauli Niinistö(외교안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임: 2012년 3월 1일(임기 6년)- 재선: 2018년 3월 1일(임기 6년)○ 총리: Juha Petri Sipil(내각 총괄)<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임: 2015년 5월 29일(임기 4년)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73-08-24 (자료원 : 외교부,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사증면제 교환각서 교환	1974-02-18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협약	1979-02-08		
발명특허권, 실용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상호부여 및 보호 각서 교환	1979-09-13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협정	1979-09-13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1989-05-24		
문화협정	1993-10-21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1993-10-21		
사증면제협정 개정 각서 교환	1994-01-19		
항공업무협정	1996-11-12		
정보통신협력약정	2002-04-09		
원자력협력협정	2013-10-23		
사회보장협정	2015-09-09		

<자료원 : 관세청,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교민 수

555 명 (자료원 :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핀란드와 한국은 오랜 기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냉전 종식 이후 북한보다 한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10월 유럽연합 국가 중 첫 번째로 한국-유럽연합 기본협력협정을 비준하였다.

2000년 10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거점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타르야 할로넨(Tarja Halonen)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

최됐고 이를 계기로 하여 양국의 관계가 이전보다 증진됐다. 2006년 9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핀란드 국민방문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관계의 실질적 우호 관계가 확립됐다.

2018년 2월 Juha Sipil 핀란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여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하였으며, Timo Soini 핀란드 외교장관은 같은 시기 한-핀란드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였다. Sampo Terho 핀란드 유럽문화체육 장관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여 양국간의 스포츠 교류를 지원했다.

경제

1) 무역/통상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로 인해 교역환경이 개선되었으나, 2013년 노키아의 무선사업 부문 매각 등에 따른 핀란드 전자산업의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핀란드 수출은 감소한 바 있다. 핀란드에서 삼성, LG, 현대기아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 브랜드에 비해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핸드폰, 전자제품, 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의 호조는 한국제품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이에 의료기기, 전자제품, 기계부품 등을 유통하는 핀란드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핀란드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핀란드 진출 기회는 이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계, 의료기기, 건설자재, 자동차부품(애프터마켓) 등의 핀란드 바이어들은 현재 꾸준히 신제품을 찾고 있다. 그 외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 대륙의 대형시장에 우선 진입하기에는 부담되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핀란드 시장을 유럽시장 전체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핀란드를 기반으로 접경 및 인근 지역인 러시아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

2) 경제협력

한국과 핀란드 사이에는 1977년 창립된 한국-핀란드 경제협력위원회(Korea-Finland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1977년 구주 통상사절단의 핀란드 방문 기간 중에 창립됐으며, 한국 전경련과 핀란드 경제인 연합회(EK)가 양국을 대표하는 주관단체이다. 창립 후 2013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행사는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대통령이 참석했다.

2008년 핀에어(Finnair)의 핀란드-인천 직항 노선 개설 후 양국 간 방문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핀란드를 방문한 한국인은 29,404명이고 총 52,022박을 보냈다. 반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핀란드인은 13,087명이다.

문화

2013년은 핀란드-한국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로, 핀란드와 한국 간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한국 음식과 K-Pop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핀란드에서도 한국 식품과 아이돌 스타들의 공연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형 슈퍼에서 고추장, 김치 등과 같은 한국 식품을 찾아볼 수 있고, 2015년 7월부터 국영 주류판매점인 Alko에서는 소주를 판매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한국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연간 1~2회 정도 개최되고 있다. 2016년에는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핀란드어로 된 한국요리 책을 발간, 한국문화 전파에 노력했다. 주핀란드대사관은 'K-pop 월드 페스티벌 헬싱키 예선'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에 개최된 예선에는 14개 팀과 4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0.63	0.5	2.77	3.04	1.66
명목GDP (십억\$)	273.04	232.58	239.15	252.75	276.55
1인당 GDP (PPP, \$)	40,897.11	41,235.37	42,597.77	44,492.19	46,559.2
정부부채 (% of GDP)	60.2	63.54	62.95	61.33	60.52
물가상승률 (%)	1.21	-0.16	0.39	0.84	1.21
실업률 (%)	8.66	9.38	8.79	8.53	7.67
수출액 (백만\$)	74,334.75	59,739.64	57,419.39	67,285.29	-
수입액 (백만\$)	76,766.89	60,437.12	60,849.03	70,106.94	-
무역수지 (백만\$)	-2,432.14	-697.48	-3,429.64	-2,821.65	-
외환 보유고 (백만\$)	8,853.89	8,418.11	8,729.18	8,537.13	8,361.07
이자율 (%)	-	-	-	-	-
환율 (자국통화)	-	-	-	-	-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핀란드 경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점증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4월 리카넨(Erkki Liikanen) 중앙은행 총재와 오르보(Peteri Orpo)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불황은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핀란드 2018년 11월 기준 핀란드 경기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 재무부는 단기금리(3개월물 유리보)는 2019년까지 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장기금리(국채 10년물)는 2017년부터 조금씩 높아져 2018년 6월 0.63%를 기록하였다. 유로환율은 지속되는 ECB의 정책금리인하와 아울러 약세 압력이 작용하면서 달러 대 유로화 환율(EUR to USD)은 2017년 2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3월부터 상승했다. 2018년 1월 중에는 매파적으로 해석된 12월 ECB 회의 의사록, 경기호조 지속 등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로 급등하였다(유로화 강세, 1.25). 이후 단기금락 부담 및 저물가 지속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 12월 달러 대 유로 환율은 약 1.1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 재무부는 유가회복과 에너지가격, 서비스가격 인상으로 인해 2016년 물가가 0.4%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는 세금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유류, 전기, 담배 가격이 올라 물가가 0.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꾸준한 물가 상승이 이어져 2018년 10월 1.5%를 기록했으나, 유럽 평균치인 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의 실업률은 2012년 7.7%를 기록했으며, 2013년은 노키아 등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8%에 이르렀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도 대기업들의 인력 감원이 지속되어 2015년 실업률이 9.4%까지 상승했다. 2016년 상반기에 마이크로소프트모바일(1,350명), 노키아(1,300명), 피스카스(286명), 후지쓰(140명) 등의 감원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고용인원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8.8%로 감소했다. 2017년에도 실업률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뉴스가 연달아 발표되었으나, 자동차, 조선산업에서 인력을 채용해 전년 대비 0.2% 더 낮은 8.6%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2018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6%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경제 전망

2018년 6월 핀란드 재무부와 중앙은행, 노르데아(Nordea)은행 등의 전망에 따르면, 수출 및 투자 증가, 고용 및 개인소비 확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2018년에도 전반적인 거시지표가 개선되었으며 GDP 성장률은 2017년 2.7%에서 2018년에는 2.9%로 상승, 2019년은 2.2%, 2020년은 1.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 재무부는 국가적으로 무역이 핀란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4년만에 최초로 플러스를 기록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기계와 부품 등 중간재가 수출을 견인하고, 2017년에는 산림산업의 투자가 증가했으며 2018년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년 11월 기준).

국가별로는 Brexit의 영향을 받는 영국을 제외하고 스웨덴, 러시아, 미국, 독일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수출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16년까지 감소했으나, 러시아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수입면에서 핀란드는 종전까지 서비스 수입 규모가 제품 수입보다 큰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중간재 수입 증가로 인해 제품 수입규모가 서비스 수입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수시장은 민간소비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해 건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디아 은행에 따르면, 2016년 9월 타결된 경쟁력협약에 따라 2017년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1% 이하에 불과하다. 2017년 9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반영한 2018년/2019년 임금상승률은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핀란드 재무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핀란드은행은 2020년에는 실업률이 7.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633,785,335
2	스웨덴	8,158,533,853
3	러시아	6,069,242,668
4	미국	4,913,738,814
5	네덜란드	4,381,789,757
6	영국	3,803,891,334
7	중화인민공화국	3,326,035,045
8	에스토니아	2,349,403,745
9	벨기에	2,268,854,181
10	노르웨이	2,028,290,869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099,889,695
2	스웨덴	6,049,930,545
3	미국	4,003,917,948
4	네덜란드	3,825,796,158
5	러시아	3,443,649,012
6	영국	2,895,073,895
7	중화인민공화국	2,796,367,572
8	Areas, nes	1,853,777,892
9	에스토니아	1,725,259,605

10	노르웨이	1,710,537,542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363,687,092
2	스웨덴	6,083,207,587
3	미국	4,153,045,167
4	네덜란드	3,734,389,025
5	러시아	3,234,449,587
6	중화인민공화국	2,933,649,262
7	영국	2,584,942,353
8	벨기에	1,830,410,609
9	Areas, nes	1,795,839,400
10	프랑스	1,731,090,79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398,923,700
2	스웨덴	6,855,168,318
3	네덜란드	4,479,964,053
4	미국	4,363,855,564
5	러시아	3,795,545,757
6	중화인민공화국	3,728,816,158
7	영국	2,911,936,521
8	Areas, nes	2,279,913,041
9	벨기에	2,121,037,739
10	프랑스	2,031,400,208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11,377,221,347
2	독일	10,168,289,258
3	스웨덴	8,638,185,577
4	중화인민공화국	4,950,628,453
5	네덜란드	3,943,812,573
6	미국	2,841,265,904
7	덴마크	2,543,085,197
8	프랑스	2,428,352,328
9	영국	2,366,945,351
10	노르웨이	2,157,120,450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990,539,819
2	스웨덴	6,744,042,668
3	러시아	6,587,281,553
4	중화인민공화국	4,368,658,494
5	네덜란드	3,167,943,473
6	프랑스	2,263,989,099
7	미국	2,109,856,444
8	Areas, nes	2,056,501,205
9	덴마크	1,914,137,937
10	영국	1,866,569,774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816,944,447
2	스웨덴	6,737,847,896
3	러시아	6,701,563,001
4	중화인민공화국	4,456,430,916

5	네덜란드	3,028,527,275
6	프랑스	2,411,682,164
7	미국	2,228,118,791
8	Areas, nes	1,868,589,443
9	영국	1,818,333,655
10	에스토니아	1,799,709,884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0,663,850,174
2	러시아	9,206,265,950
3	스웨덴	7,669,034,771
4	중화인민공화국	5,123,198,214
5	네덜란드	3,242,824,993
6	프랑스	2,617,133,342
7	Areas, nes	2,217,205,108
8	미국	2,153,913,726
9	영국	2,051,796,770
10	에스토니아	2,029,449,082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4,666,961,295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223,473,851
3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055,698,381
4	440710	침엽수류	2,037,032,989
5	470321	침엽수류의 것	1,680,843,731

6	481092	여러 겹의 것	1,678,059,868
7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1,368,219,329
8	481013	롤상의 것	1,096,015,685
9	721933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080,476,592
10	850440	정지형 변환기	987,638,261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828,744,258
2	271019	기타	2,391,268,416
3	440710	침엽수류	1,715,839,832
4	4703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1,558,639,543
5	481092	여러 겹의 것	1,531,826,524
6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374,451,986
7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1,118,645,658
8	721933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001,338,872
9	481013	롤 모양인 것	954,573,677
10	850440	정지형 변환기	773,562,146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95,615,191
2	271019	기타	2,681,053,329
3	440710	침엽수류	1,806,484,895
4	481092	여러 겹의 것	1,551,695,369
5	4703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1,501,928,395
6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458,761,405
7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967,631,867
8	721933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	909,406,027
9	481013	롤 모양인 것	894,762,604
10	901890	그 밖의 기기	892,639,004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021,926,148
2	271019	기타	3,157,483,906
3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882,355,386
4	481092	여러 겹의 것	1,717,686,134
5	4703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1,705,147,185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652,924,709
7	440712	-	1,089,603,566
8	721933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034,034,726
9	901890	그 밖의 기기	1,000,438,858
10	440711	-	952,165,102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8,396,749,900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021,843,018
3	271019	기타	3,224,565,227
4	300490	기타	1,418,186,013
5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1,134,972,363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119,537,491
7	271600	전기에너지	1,025,319,796
8	260300	동광과 그 정광	773,461,168
9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70,300,657
10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638,256,070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601,635,067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994,486,872
3	271019	기타	1,640,000,634
4	300490	기타	1,267,324,848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968,777,487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15,738,427
7	271600	전기에너지	704,982,190
8	260300	동광과 그 정광	642,629,330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563,580,969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529,691,274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372,324,606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787,901,583
3	271019	기타	1,748,184,842
4	300490	기타	1,323,340,416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003,239,837
6	271600	전기에너지	763,662,504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00,231,168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626,651,593
9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611,423,195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591,867,22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776,875,328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921,128,737
3	271019	기타	1,715,867,527
4	300490	기타	1,225,866,828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076,245,445
6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1,008,959,680
7	271600	전기에너지	811,492,346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57,028,730
9	260300	동광과 그 정광	724,395,096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664,731,133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340	1,356	-1,016
2015	309	1,083	-774
2016	330	920	-590
2017	297	975	-678
2018	251	1,128	-87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71	0	71
2	2140	합성수지	18	5	13
3	3203	타이어	16	0	15
4	7532	플라스틱금형	10	0	10
5	5151	문구	6	3	2
6	2262	의약품	31	13	18
7	7414	전기자동차	2	0	1
8	8411	발전기	10	70	-61
9	7251	건설중장비	4	4	0
10	2150	합성고무	7	0	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1	승용차	72	0	72
2	2140	합성수지	17	4	13
3	3203	타이어	14	0	14
4	7532	플라스틱금형	10	0	10
5	5151	문구	8	2	6
6	2262	의약품	7	9	-2
7	7414	전기자동차	6	0	6
8	8411	발전기	6	93	-87
9	7251	건설중장비	5	3	2
10	2150	합성고무	5	0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	126	-124
2	7464	선박용 부품	0	87	-87
3	8411	발전기	10	70	-61
4	7901	기타기계류	0	35	-35
5	0313	합판	0	31	-32
6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0	16	-16
7	2522	인쇄용지	2	11	-9
8	6231	니켈괴및스크랩	0	17	-17
9	0312	제재목	0	37	-37
10	7275	제지인쇄기계부품	0	12	-1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	233	-231
2	7464	선박용 부품	0	229	-229
3	8411	발전기	6	93	-87
4	7901	기타기계류	0	36	-36

5	0313	합판	0	33	-33
6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0	29	-29
7	2522	인쇄용지	0	28	-28
8	6231	니켈괴및스크랩	0	28	-28
9	0312	제재목	0	27	-27
10	7275	제지인쇄기계부품	0	22	-2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7.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발효 전 망)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2018.12월 양측 의회 비준 완 료 2019.2.1 발효 전망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발효 전망)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 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 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 잠비크(2018.2.4))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 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3.1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4월 부로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Stepping ston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8.1), 페루(2013.3.1), 에콰도르(2017.1.1)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8.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1) 과테말라(2013.12.1)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 2016. 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3월,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월,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 2012.4월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 2014.4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 2018.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 2017.2월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 2016.12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 2013년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	협상 중, 직전협상 : 2018.7월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4.2.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 2000.10.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협상: 2018.7월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협상: 2018.7월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중, 협상 개시일 2013.11월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 2017.2월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부분 현대화 추진 중 (협상 개시 : 2017.11.16.)	기존 협정 발효일 : 2005.3.1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 2013.10.12)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 1998.3.1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73류 일부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03-26
2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규제중)	2016-02-18
3	7225.11, 7226.11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4-08-14
4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9-08-12
5	2804.69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6-04-20
6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2001-06-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외에도 EU는 현재 훈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2015년 9월, 유럽 의회는 물개제품에 대한 교역 금지를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을 압도적 표결(찬성 631표, 반대 3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물개잡이를 금지하고 물개고기에 관련된 제품 수입을 금지했었으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물개잡이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물개잡이만 허용해왔었다. 2014년 6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WTO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2월 물개 관련 제품의 수입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따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핀란드 안전·화학물질청(Tukes)은 2015년 5월 1일부터 총 건조 중량kg당 3mg 이상 크롬 VI가 포함된 가죽 자재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크롬 VI가 포함된 가죽 자재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 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성 피부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일정량 이상 포함된 가죽 자재의 경우 시장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를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삭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 (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 주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인증, REACH, CPNP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①화학물질,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됐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ECHA는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장품 제품 관련 규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규정적용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아직까지도 국내업체들 중에 CPNP에 대해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역내 법적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의 책임자가 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제품이 EU 현지 브랜드 또는 역내 유통사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통사가 책임자가 된다. 참고로 지정된 책임자는 제품 시장출시 전 EU 집행위 사전신고를 비롯해 불량제품 발생 시 시장철수 및 리콜 등 규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로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이 있다.

CPNP 인증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KOTRA 뉴스를 참고할 수 있겠다.

- CPNP 정보 링크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ldx=169902&pageViewType=&column=title&search=cpnp&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searchIndustryCatel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5) E-Mark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써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몰타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 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2의 부록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지난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신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신 장난감 안전지침의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2)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컵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용기에는 일정한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의 경우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식품 용기 내 BPA 사용을 금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15,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은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유럽 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S(BPS)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BPS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제조 기업의 BPS 사용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핀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에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속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EU FTA에 의거해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18년 12월 10일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수입통관

○ 사전신고(Entry Summary Declaration): 수입품이 핀란드를 통해 처음 EU 권역 내로 들어오는 경우, 내역에 포함된 상품이 EU 영역에 도착하기 이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사전신고가 제출되어야 한다. 수입품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송업자에 사전신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사전신고 내역은 핀란드 관세청 AREX 전자 시스템에 입력된다.

○ 요약신고(Summary Declaration): 수입품이 다른 EU 국가로부터 항공/해운을 통해 핀란드까지 운송되는 경우, 요약신고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내역은 핀란드 관세청 AREX 전자 시스템에 입력된다. 관세사무소로 상품을 운송하는 자에게 요약신고 제출 책임이 있으며, EORI 번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단, 사전신고와 더불어 상품도착보고까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요약신고를 겸하게 되며, 따로 요약신고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상품도착보고(Arrival Notification and Presentation): 핀란드 항구 또는 공항으로 상품이 하역됨과 동시에 상품도착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임시창고에 들어가는 상품에 대하여 전자 하역보고(electronic unloading report)가 관세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우편통관

EU 외 지역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우편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영 우체국 포스티(Posti)는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의 도착을 수령인에게 통보하며, 핀란드 관세청에서 통관비용 및 관세를 계산하여 전체 운송비용에 포함시킨다. 보통 포스티가 개인/기업 고객 모두에게 통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관절차를 마친 물품은 직접 수령인에게 배달되거나 가까운 우체국으로 운송된다. 포스티는 2015년 1월 1일부터 경영 효율화를 위해 우편업무와 물류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2016년 5월부터 현지 대출회사와 연계 대출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방문진료 등의 건강사업으로의 확장도 검토 중이다. 포스티는 청소기업인 SOL과 합작투자해 FLEXO를 설립하여 사내 물류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3) 전시물품 통관

총금액 45유로 이하의 인보이스를 동봉하고, Non-Commercial Sample이라 명기하는 경우 별도의 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4) 소액물품 통관

총금액이 45유로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선물)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통관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명세서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 중량 그리고 포장의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검역증(Certificate of Quarantine) 및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or Sanitary Certificate): 검역증은 주로 동식물의 수출에 혹시 전염성 균이 묻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품을 고립된 일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동안 장치하여 두어 검역을 한 후 발급해주는 서류이며, 위생증명서는 주로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이 EU가 정한 기준에 합치된다는 증명서이다.
-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및 성분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검사증(Certificate of Inspection), 용적 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Measurement and/or Weight) 등 신용장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세관의 조사항목

EU 세관 당국이 담당하는 주요 조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상품의 분류코드, 원산지, 상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할 관세의 종목과 부과액 통제
- 세관 감독하의 상품(일시적인 보관 또는 특정 세관 규정에 따른 상품) 감시 통제
- 통상 정책(목적)에 따른 조치 및 통상적인 통행의 통제
- 보안, 안전 및 공공 보건 요건에 관한 통제
-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통제
- 공동 농업 정책(CAP) 준수를 위한 통제
- 가축, 열처리, 보건 및 품질 규제에 관한 관리

3)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 o 핀란드 관세청
 - 홈페이지: www.tulli.fi
 - 전화번호: +358 295 5200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o TNT express (TNT Suomi Oy)

주소	Tullimiehentie 2, 01530 Vantaa, Finland
전화번호	+358 300 188 800
이메일	sales.support@tnt.fi
홈페이지	https://www.tnt.com/express/ko_kr/site/home.html (한글)
비고	물류 운송

o FedEx Express

주소	Juurakkotie 6, 01510 Vantaa, Finland
전화번호	+358 10 800 515
홈페이지	https://www.fedex.com/fi/

비고	물류 운송 http://www.fedex.com/fi_english/contact/ *상기 주소를 통해 목적에 맞게 문의 가능
----	---

◦ DHL Express

주소	Tullimiehentie 10, 01530 Vantaa, Finland
전화번호	+358 30 45 345
홈페이지	https://www.dhl.fi/fi.html
비고	물류 운송 http://www.dhl.fi/en/contact_center/contact_express.html *상기 주소를 통해 목적에 맞게 문의 가능

◦ Varova Oy

주소	Lautatarhankatu 6, 00580 Helsinki, Finland
전화번호	+358 9 773 961
이메일	info@transtore.co.nz
홈페이지	https://www.varova.fi
비고	항만 운송

◦ VR

주소	Vilhonkatu 13, 00100 Helsinki, Finland
전화번호	+358 600 41 902
홈페이지	https://www.vr.fi
비고	철도 운송 http://www.dhl.fi/en/contact_center/contact_express.html *상기 주소를 통해 목적에 맞게 문의 가능

◦ Finnsteve Oy Ab

주소	Komentosilta 1, 00980 Helsinki, Finland
전화번호	+358 10 56560
이메일	info@finnsteve.fi
홈페이지	https://www.finnsteve.fi
비고	항만 서비스

○ Steveco Oy

주소	Kirkkokatu 1, 48100 Kotka, Finland
전화번호	+358 5 23 231
홈페이지	https://www.steveco.fi
비고	항만 서비스 http://www.steveco.fi/EN/Contact/Request%20for%20quotation/ *상기 주소를 통해 목적에 맞게 문의 가능

○ Euroports Rauma Oy

주소	Hakunintie 23, 26100 Rauma, Finland
전화번호	+358 2 831 21
이메일	info@euroports.fi
홈페이지	http://www.euroports.fi
비고	항만 서비스

<자료원 : KOTRA 헬싱키 무역관, 업체 홈페이지>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핀란드의 지리적 이점

투자대상지로서 핀란드의 투자 매력은 단연 스칸디나비아 반도(2,620만), 러시아(서북지역 1,390만), 발트 3국(610만), 동구권(벨라루스 950만) 시장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의 핀란드 투자는 핀란드 시장만이 아닌, 주변국과 유럽대륙으로 수출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핀란드의 우수한 또한 우수인력과 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벤처 캐피탈 투자가 활발하다.

핀란드는 냉전 시대 러시아, 발트 3국 등 동구권 국가 비즈니스를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가 풍부한 국가이다. 지리적으로는 고속열차를 이용, 핀란드 헬싱키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3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모든 상품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12시간, 모스크바까지 24시간 이내에 운송될 수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지정학적 이점은 CIS 국가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2) 투자 매력도

핀란드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법인세를 24.5%에서 20%로 인하, 주변 북유럽국가의 법인세율(스웨덴·덴마크 22%, 노르웨이 24%)에 비해 기업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매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7-2018년도 발표에 따르면 Institution(1위), Health and Primary education(1위),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2위), Innovation(4위),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4위)에 선정될 만큼 안정된 제도와 높은 수준의 인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순위 10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 철수 이후 실직상태에 있는 고급연구인력은 해외 IT 기업들이 기술 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이다. 잘 갖춰진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높은 세금, 엄격한 환경보호 관련 규정, 언어장벽 등 여타 지역보다 불리한 여건이 있으나 핀란드 국민들은 법질서에 매우 충실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영어가 잘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사용 연령층과 범위가 넓어 상대적으로 자국 언어의 자부심과 집중화가 높은 여타 유럽국가들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

3) 세관, 세무, 노동청의 행정 투명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도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 따라서 정부 기관도 불필요한 관례는 철저히 지양하고, 업무 추진 시 투명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한다. 특히, 핀란드는 납세 및 소득 내역을 제3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조세 투명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4) 투자위험도

핀란드는 시장이 협소하고 고임금, 고물가로 인한 생산단가가 높아 외국인 투자가 용이한 지역이 아니다.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1.5배 정도로 크지만, 전체인구가 550만 명 정도에 불과해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북유럽, 러시아, 발트 3국 등 배후시장을 함께 겨냥한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신용등급은 S&P가 AA+(안정), 무디스 Aa1(안정), 피치 AA+(안정)로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낸 바 있다 (2018년 7월).

핀란드 총리인 Juha Sipil가 핀란드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스웨덴, 독일 등에 비해 높은 인건비를 꼽을 정도로 핀란드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로 인해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2016년 9월 90% 이상의 노조원이 동의한 경쟁력 협약 (Competitiveness Pact)이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본 협약에서 참가하지 않은 물류, 건설, 식품노조를 제외한 핀란드의 단위임금 상승률은 경쟁국인 스웨덴, 독일 등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투자유치기관

- Invest in Finland

- 홈페이지: www.investinfinland.fi(영어, 핀란드어)
- 주소: Porkkalankatu 1, 00100 Helsinki, Finland
- 전화: +358 29 50 55000
- 이메일: www.investinfinland.fi/contact에서 분야별 담당자 이메일 확인 가능

6) 투자장려분야

- 바이오 경제(Bioeconomy)
- 클린테크(Cleantech)
- 건강관리 및 웰빙(Healthcare and Weebeing)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제조업(Manufacturing)
- 광산업(Mining Industry)
- 소매업(Retail)
- 여행업(Travel and Tourism)

7) 외국인 투자법 개요

핀란드는 1989년 외국인의 대 핀란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이는 기업,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 주식 규제 관련 법규: 주식 시장법(the Securities Market Act)은 1989년 8월 발효됐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 및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 환경 관련 법규: 핀란드는 대기보호법(Air Protection Act) 및 수질보호법(Water Protection Act)과 같은 여러 환경 보호 관련 법규를 제정해 왔으며 이러한 법규들은 소음 공해법(Noise Control Act), 공공건강관리법(Public Health Act) 및 근린 시설법(Adjoining Properties Act) 등과 더불어 관련 관청 혹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핀란드의 품질보증법(Product Liability Act)은 엄격한 책임 개념을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다. EU의 지침과 동 법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핀란드에서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안전법(Product Safety Act) 그리고 식료품에 대한 법규를 가지고 있다.

- 공정 경쟁 관련 법규: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은 1992년 제정됐으며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공정 경쟁을 한 경우 제재로서 최고 연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물게 되어 있다.

- 정부소유 기업 관련 법규: 공익목적을 위해 국영 철도, 주류 도매 및 유통, 복권 판매 등 일부 산업 분야 독점을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내 법인설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핀란드 특허·등록청(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 홈페이지: www.prh.fi (영어, 핀란드어)
 - 주소: Arkadiankatu 6 A, 00100 Helsinki
 - 전화번호: +358 29 509 5030
 - 이메일: registry@prh.fi

투자인센티브

1) 해당 국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지급내용

핀란드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핀란드 정부 및 EU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Invest in Finland와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경제개발센터(ELY, Centers for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또한 외국 기업에게 기업교육이나 부지선정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핀란드 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혜택은 중소기업 또는 기술기업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내국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역보조금: 해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또는 경제개발센터 센터의 인센티브는 지정된 개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Lapland, Northern Ostrobothnia, Kainuu, Northern Karelia, and Savo와 같은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운송비용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발 지역 1로 지정된 구역(핀란드 북쪽이나 동쪽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투자자들은 감가상각률에 의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은 첫 24개월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외진 지역에 있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큰 기업이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 등 특별한 성과를 내면 투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사화나 제품 개발 과정의 도움 또한 받을 수 있다.

-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은 견습직과 일용직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550유로까지 지급된다. 견습직은 고용 기간이 10달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국책 R&D 지원사업 선정 등: 핀란드는 세계에서 연구개발에 가장 집중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핀란드의 기술혁신지원청(TEKES)은 핀란드에서 공공예산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핀란드 무역투자진흥공사(Finpro)와 합병되어 Business Finland로 운영되고 있다.

핀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핀란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17년보다 약 8,570만 유로가 증가한 약 18.8억 유로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문화부(61.8%), 고용경제부(26.1%)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기관별로는 대학(6억 1,500만 유로), 학술진흥재단(Academy of Finland, 4억 4,400만 유로), Business Finland(구 TEKES & FinPro, 3억 9,100만 유로) 등에 배분되었다. 이외 정부 연구소, 대학병원 등에도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Business Finland는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외국 기업 중 핀란드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혜택을 부여한다.

Business Finland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Tempo funding은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에 최대 5만 유로(프로젝트의 75%)를 지원한다. 자금지원의 효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usiness Finland (TEKES & FinPro)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총매출액 증가는 지원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5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및 담보: 핀란드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수출보험공사인 Finnvera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를 모든 분야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 대출을 제공한다.

2) 투자 인센티브 지급절차

핀란드에 투자할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매입 등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 법인설립 시에는 특허 및 기업등기소(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와 국세청(Vero)에 등록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들은 지원기관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와 관련된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LY Center, Business Finland, Finnvera 등에 신청이 필요하다.

제한 및 금지(업종)

핀란드 관련 법규상 외국인의 핀란드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1996년까지 서점, 보안서비스, 국내항공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투자제한이 있었으나, 2017년 6월 기준 대부분 개방됐다. 이전까지 법인세 등의 사유로 시 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던 기업 및 사무소 설치, 그리고 M&A 등의 경우에도 EEA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비 EEA 국민 또는 법인은 고용경제부의 사전허가만 있으면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1993년 체결된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에 따라, 종업원 1,000명 이상, 연 매출 2억 달러 이상인 핀란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공공이익 및 국방, 공공질서 및 보건 등의 특별한 분야에 한해 핀란드 정부는 투자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별장과 국경 근처의 자산은 일부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국영기업들의 주식매매는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정부 또는 주 정부 지분 5~1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가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안전문제 혹은 금융리스크가 동반되는 업종은 비 EEA 국민 혹은 법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 혹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핀란드에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없음.

주요 지역별 여건

없음.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168.62	18,303.61	1,483.93	11,644.46	1,327.9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2,401.88	1,182.12	-16,583.88	25,621.79	1,726.82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4	1	3,358	4	3,346
2015	7	3	7,831	7	7,809
2016	5	2	13,224	6	7,291
2017	8	2	36,887	17	38,625
2018	1	1	294	4	1,47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346	1	346
도매 및 소매업	3	0	3,012	3	3,0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	2	579	4	5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7,252	3	7,22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	1	6,694	4	1,127
정보통신업	1	1	4,500	1	4,500
금융 및 보험업	1	0	365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1,665	1	1,66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	1	33,052	12	34,792
정보통신업	4	1	1,999	4	1,99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1,836	1	1,83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294	4	1,47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LG전자 연구개발 연구소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연구개발 연구소
업종	전자, 통신, IT
취급분야	전자, 통신, IT
모기업명	LG전자

○ 동화 핀란드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인수합병
업종	화학
취급분야	테고필름 전문 생산업체인 코트카밀 임프렉스(Kotkamills Imprex)를 인수, 운영
모기업명	(주)동화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1인 혹은 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신규 상법에 의해 주주의 거주지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사회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유럽경제구역(EEC, European Economic Area)의 거주자가 필요하다. 위의 조건은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소자본금은 2,500유로이며, 이 금액은 핀란드 등기소(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에 상업등기를 하기 전에 전액 납부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상업등기를 마친 후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는 출자 지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진다. 한편, 상장주식회사는 최소 80,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회사명에는 반드시 'osakeyhti(limited liability company)' 라는 단어를 넣어야만 하며 약자로는 'oy'로 표기한다. 스웨덴어로는 'aktibolag', 약자로는 'ab'를 넣어야 한다. 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핀란드어로는 'julinen osakeyhti'(Oyj), 스웨덴어로는 'publikt aktiebolag' (abp)를 넣어야만 한다.

○ 합명회사: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한 명은 EEA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일 경우 EEA 국가 안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파트너 모두 EEA 국가에 속하지 않을 경우 발기인 모두 NBPR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명회사에는 금전적인 투자가 필히 요구되지는 않으며, 사업에 있어서 업무 기여만으로도 충분하다.

○ 합작회사: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한 명은 무한책임사원이어야 한다. 적어도 한 명의 무한책임사원은 EEA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일 경우 EEA 국가 안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EEA국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무한책임사원들이 NBPR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다. 유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일정 금액의 투자를 하여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은 투자가 필히 요구되지 않는다. 최저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지사

지사는 반드시 상업등기를 해야만 하며, 자본금은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비 EEA 지역의 회사나 재단이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등기소에 지사 설립 허가를 위한 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수수료는 120유로이다. 핀란드 내에 설립된 외국인 기업 지사의 상호 (trade name of a branch)는 해당 기업의 외국인 법인명과 함께 보충명을 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CDE Cargo Ltd., branch of Finland 와 같이 해당 기업의 지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상호(trade name)는 2개 혹은 3개 언어로 등록이 가능하다.

지점의 개설은 상업등기소(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에 등록함으로써 가능하다. 본사의 주소지에 따라 대표자 등의 요건이 차이가 난다. EEA 권역 내에 주요 거점이 있거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반드시 EEA 권역 내에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핀란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필요서류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소요 기간과 비용은 각각 14일과 380유로이다. 회사명은 외국 기업의 지점임을 명시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업등기 시에 다음 문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지사설립 증명 및 지사대표 선출 관련 문서
- 외국 기업의 대표 혹은 그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 명부
- 설립의향서 및 회사정관, 규정 등의 사본
- 핀란드 사회보장번호(Finnish personal identity code)가 없는 개인의 여권 사본

모든 법인은 핀란드 회계기준에 의거한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외국 회사의 지점에는

법인세 20%가 부과되며, 핀란드 내에 있는 지점의 모든 활동에 부가세도 부과된다. 단, 수익의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지점을 운영할 경우 핀란드 회사와 동일하게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천세, 복지보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월 별 세금 신고 및 연간 급여신고서를 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업등기소: www.prh.fi/en.html
- 상업등기 관련 페이지: www.prh.fi/print/en/kaupparekisteri.html
- 현지 로펌 면담 결과: Doing Business, World Bank: www.doingbusiness.org

연락사무소

외국 회사가 등록 없이 핀란드 내에 Representative Office 혹은 이와 유사한 사무소를 설립할 수는 있으나, 핀란드 내에서 법적인 실체로서 인정은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핀란드 내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혹은 지사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1인 혹은 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신규 상법에 의해 주주의 거주지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사회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유럽경제구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의 거주자가 필요하다. 위의 조건은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소자본금은 2,500유로이고 이 금액은 핀란드 등기소(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에 상업등기를 하기 전에 전액 납부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상업등기를 마친 후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는 출자 지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진다. 한편, 상장 주식회사는 최소 80,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법인등록 절차 중 모든 구비서류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하거나,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된 공증된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상업등기 시에 다음 문서들의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설립의향서 및 회사정관
-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핀란드 유한책임회사법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사회 회원들의 동의서
- 감사의 자본금 납입 확인서

법인은 정관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필요서류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소요 기간과 비용은 각각 14일과 380유로이다.

회사명에는 반드시 'osakeyhti(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단어를 넣어야만 하며 약자로는 'oy'로 표기한다. 스웨덴어로는 'aktibolag', 약자로는 'ab'를 넣어야 한다. 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핀란드어로는 'julinen osakeyhti(Oyj)', 스웨덴어로는 'publikt aktiebolag' (abp)를 넣어야만 한다. 핀란드에 설립하는 법인은 1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정관에서 지정한 수의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법인은 핀란드 회계기준에 의거한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감사를 지정해야 한다.

모든 유한회사는 핀란드 이외의 국가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포함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법인

의 경우 핀란드 회사와 동일하게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천세, 복지보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월별 세금 신고 및 연간 급여신고를 해야 한다.

핀란드 내 법인설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핀란드 특허·등록청(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 홈페이지: www.prh.fi (영어, 핀란드어)
 - 상업등기 관련 페이지: www.prh.fi/print/en/kaupparekisteri.html
 - 주소: Arkadiankatu 6 A, 00100 Helsinki
 - 전화번호: +358 29 509 5030
 - 이메일: registry@prh.fi
 - 현지 로펌 면담 결과 확인: www.doingbusiness.org (Doing Business, World Bank)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개인사업자

최소자본금 없이 설립할 수 있다. 무역업을 하거나(licensed trade), 거주지 외에서 영업하거나, 가족을 제외한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상업 등기(Trade Register)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비는 110유로이다. 상업 등기에 등록되면 상호명 보호(Corporate name protection)를 받을 수 있다.

핀란드 특허·등록청(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https://www.prh.fi/en/kaupparekisteri/yrityksen_perustaminen/forms_of_business.html

합명회사, 합작회사

○ 합명회사: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한 명은 EEA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일 경우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안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파트너 모두 EEA 국가에 속하지 않을 경우 발기인 모두 NBPR(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명회사에는 금전적인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으며, 사업에 있어서 업무 기여만으로도 충분하다.

○ 합작회사: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한 명은 무한책임사원이어야 한다. 적어도 한 명의 무한책임사원은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일 경우 EEA 국가 안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EEA국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무한책임사원들이 NBPR(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다. 유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일정 금액의 투자를 하여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은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최저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공장 설립

공장을 세우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빌딩을 물색한 후, 토지/빌딩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구입한다. 토지나 빌딩을 찾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체나 Invest In Finland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지 건설업체와의 계약 또는 국내 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 형태의 진입 등으로 공장 건설 단계에 돌입하면 된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Hannes Snellman

전화번호	+358 9 228 841
주소	Etelaesplanadi 20, 00131 Helsinki, Finland
이메일	mikko.heinonen@hannessnellma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변호사 151명 근무(스웨덴, 덴마크, 러시아에도 사무실 운영)

○ Bergman Attorneys at Law

전화번호	+358 9 6962 070
주소	Etelaranta 4 B 9, 00130 Helsinki, Finland
이메일	office@bergman.fi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변호사 5명

○ Merilampi

전화번호	+358 9 686 481
주소	Lonnotinkatu 5, 00120 Helsinki, Finland
홈페이지	http://www.merilampi.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헬싱키와 탐페레에 사무소, 변호사 63명 근무 http://www.merilampi.com/index.php/people/?lang=en 위 주소를 통해 분야별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 발송 가능

○ HPP Attorneys

전화번호	+358 9 474 21
주소	Bluevardi 1A, 00100 Helsinki, Finland
홈페이지	http://www.hpplaw.com/experts/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변호사 67명 근무 http://www.hpplaw.com/experts/ 위 주소에서 담당자 연락처 확인 가능

o Bird and Bird

전화번호	+358 9 622 6670
주소	Mannerheimintie 8, 00100 Helsinki, Finland
이메일	jaakko.hietala@twobird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변호사 50명 근무

<자료원 : KOTRA 헬싱키 무역관, 각 사 홈페이지>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법인 철수 및 청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청산·사업 종료 사실을 상업등기소(Trade Register)에 보고해야 하며, 상업등기소로부터의 제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법인의 보호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1) 유한책임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총회의 청산 결정, 합병, 분할, 파산, 또는 핀란드 등기소나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록취소/청산 결정 중의 사유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기업의 청산은 다음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 청산 신고: 주주총회에서의 청산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청산인들은 청산 결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청산 절차는 보통 결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등기소에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한 최소 1인의 청산인이 EEA 내 거주민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미성년자, 파산자, 영업정지 중인 개인, 후견인의 보호 하에 있는 개인, 법적 권리가 제한된 개인 등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 사용 양식: Form Y4, Appendix Form 13
- 구비서류: 청산 결정을 내린 주주 총회의 의사록
- 수수료: 85유로(미리 지불)

○ 공시최고신청: 청산인들은 반드시 등기소에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청산 신고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Appendix Form 13의 'Selvitystila, II Julkinen hastes' (Liquidation, II Public summons) 항목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공시최고신청은 법인의 채권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법인의 명령에 의해 청산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청산 신고 단계에서 공시최고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법인명과 Business ID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수수료는 210유로(미리 지불)이며, 등기소는 공시최고 사실을 상업등기소에 기록하며, 채권자들은 공시최고에 명시된 만기일 내에 등기소에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을 알려야 한다. 청산인은 만기일 한 달 전까지 채권자들에게 공시최고 사실 및 채권자 리스트(공시 최고법 3절 참조)를 통보해야 한다.

○ 해산 신고: 청산인이 주주총회에 결산결과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해산 절차가 개시되며, 청산인은 즉시 해산 결정 사실을 신고·등록해야 한다.

- 사용 양식: Form Y4, Appendix Form 15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결산결과를 제출한 주주 총회의 의사록

○ 결산결과 신고: 결산결과를 등기소에 신고·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해산 신고 시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Form Y4의 'Listietoja/Additional information' 항목에 결산결과 신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결산결과

2) 지사

지사의 폐쇄는 즉시 상업등기소에 보고되어야 하며, 양식으로는 Form Y4와 Appendix Form 15가 사용된다. Form Y4는 영어 또는 핀란드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기본사항들을 명시하고 지사 대표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Appendix Form 15는 핀란드어나 스웨

덴어로만 작성해야 한다. 기타 수수료나 추가 서류는 없다.

3) 철수·청산 관련 법령

- 유한책임회사법(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20장: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결정 관련사항을 규정
- 유한책임회사법 20장 17절: 해산 신고 절차 관련사항을 규정
- 유한책임회사법 8장 10절: 결산결과 등록·제출 절차 관련사항을 규정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88유로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051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6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비고	핀란드는 법정 최저임금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노사 협의에 따른 단체 협약에 따라 결정 및 권고되며 산업별로도 상이하다.				

<자료원 : 핀란드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 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은 핀란드 노동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용 관계에 적용된다.

1) 계약 형태

고용 계약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을 허가할 경우 암묵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2) 고용 조건

고용 계약 형태에 관한 조항 외에도, 고용주는 주요 고용 조건을 담은 서면 정보를 직원의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제시해야 한다. 해당되는 고용 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최소 1개월 이상의 고용 계약
- 무기한 고용 계약
- 동일한 기본 고용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체결 된 1개월 미만의 기한부 고용 계약 (예: 반복된 단기 고용).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시직의 경우에도 요청에 따라 서면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고용주는 첫 번째 급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늦어도 첫 번째 고용 관계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표시 정보

고용 조건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 시작 날짜
- 고용 계약 기간 및 기한부 고용(fixed-term) 근거
- 시험 기간 (Trial period)
- 근무지
- 직원의 직무 원칙

- 급여 또는 기타 보수의 결정 근거, 급여 기간
- 정규 근무 시간,
- 연례 휴일 및 해고 통지 기간 결정 방법 및 단체 협약 내용

4) 근무 기간

고용 계약은 기한부 고용 계약(fixed-term)과 무기한 고용 계약(valid indefinitely)으로 나뉜다. 합의된 근무 기간은 특히 고용 관계가 끝날 때 중요하다. 기한부 고용의 계약 기간은 계약 기간 종료 시 또는 미리 합의된 특정 작업이 끝난 후에 종료되며 특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대조적으로, 무기한 고용 계약은 타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서만 해지될 수 있다.

5) 연속적인 기한부 고용 계약 제한

동일한 기한부 고용 계약을 같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각 기한부 고용 계약은 정당한 사유와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고용주가 기한부 고용 계약을 악용하여 직원이 무기한 고용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피하는 것을 방지해 목적이 있다. 기한부 고용 계약이 자주,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영구적인 업무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때 더 이상의 단기 고용 계약은 허용되지 않고 고용주는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6) 시험 기간(Trial period)

시험 기간을 통해 고용주는 직원이 적합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원은 직무 및 근로 조건이 계약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기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고용주 또는 직원은 시험 기간을 통해 고용 계약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지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시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이며 기한부 근로 계약의 기간이 8개월보다 짧을 시 시험 기간은 계약된 고용 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고용주가 4개월 이상의 필수적인 업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시험 기간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근로시간

핀란드 회사들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탄력적이다. 주 40시간(점심시간 2.5시간 포함)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근무하며, 대개 오전 8~9시에서 오후 4~5시까지 근무를 한다. 점심시간은 개별적으로 보내게 되며, 퇴근을 위해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는 예외적이며, 사측의 초과근무 요청 시 반드시 미리 일정을 알려줘야 하고, 초과근무 수당은 평일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핀란드 근로시간법(Working Hours Act)에 따르면, 1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16년 9월 합의된 경쟁력협약(Competitiveness Pact)에 따라 늘어난 연간 24시간의 근로시간을 2017년부터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경쟁력협약(Competitiveness Pact)이 시행된 2017년 1분기부터 공공부문의 휴일보너스가 삭감되어 임금인상률이 지체되는 효과를 야기했다.

휴가

핀란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자는 연 6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통상 여름 휴가 4주, 겨울 휴가 1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방학과 연관성이 매우 크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매달 2.5일의 휴가를 적립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2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출산의 경우, 최초 135일의 휴가(근무일 기준)가 보장되며 휴가 기간 동안 사회보험(KELA)을 통해 임금의 60~70%를 보상받는다. 이후 아기가 3세에 이르기까지 휴가 연장이 가능하며, 매월 약 500유로의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해고

직원 해고를 위해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이유가 상실된 경우(감원 등)와 종업원의 비리, 근무태만 등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파산이나 직무상실로 인한 감원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고 분쟁 시 통상 고용주의 패소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해고는 2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분쟁에서 패소하는 경우 고용주가 최고 24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핀란드에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노사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인들은 63~68세가 되는 경우 퇴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연령을 초과하여 늦은 시기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들이 많다. 핀란드 정부는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늦은 퇴직을 장려하는 편이다.

노동조합

핀란드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별 또는 개인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연맹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현재 참여자가 많은 편으로 2016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69%에 이르고 있다.

핀란드의 3대 중앙노조는 에스아꼬(SAK), 에스떼떼꼬(STTK), 아까바(AKAVA)이며, 특히 에스아꼬(SAK)는 핀란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총으로 총조합원 수는 전 국민의 5분의 1인 1백만 명 정도('18.1월 기준 총 929,122명, 남성 503,376명(54.0%), 여성 425,746명(46.0%))이다. 전국노조 아래에는 단위별로 직종 노조가 결성되어 임금협상은 정·사·노에서 가이드 라인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임금협상은 단위 노조별로 하고 있다.

핀란드의 노동조합 영향력은 매우 강한 실정이나 정부 및 사측에 무조건 반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2016년 '경쟁력 협약(the Competitiveness Pact)'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노조가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는 계획했던 정부 지출 축소를 취소하고, 소득세 415만 유로를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로 핀란드는 2017년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과 함께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세계권리지수(ITUC Global Rights Index)'에서 1등급(권리 침해가 비정기적임. Not regular violations of rights)을 받았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고용주는 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3종류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의 책임이 고용주에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원은 매년 세무당국 및 보험회사에 급여 신고를 별도로 하며, 이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 및 세금이 결정되고 매년 5월경 전년도의 세금 및 사회보장금액을 정산하고 있다.

- 연금보험: 25.1%(이 중 6.15~7.65%는 종업원 부담)

건강보험은 사고보험에 포함된다.

- 사고보험: 1.08%(100% 고용주 부담)

고용보험

실업보험: 2.4%(이 중 1.6%는 종업원이 부담)

산재보험

사고보험: 1.08%(100% 고용주 부담)

국민연금

핀란드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과 의무적 직업연금이 그에 해당한다. 핀란드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적연금은 잘 발달되지 못한 실정이다.

○ 공적연금(Public pension): 핀란드에서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의 연금이 적은 퇴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평균 임금의 20%까지 지원해준다. 국민연금은 16세 이후 최소한 핀란드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소득비례의 직업연금은 핀란드 연금제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 근로자, 자영업자 및 공공 부문 직원과 같은 특정한 직원들이 여러 법안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이 모든 관련 법안들은 2007년에 "Employees' Pension Act(TyEL)"이라는 하나의 법안으로 통일되었다.

외국인 사회보장제도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는 외교관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해 적용했으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1996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일체의 사회보장혜택을 철회했다. 대신, 핀란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핀란드인들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외국 연락사무소 종사자나 외국 기관 파견원 및 유학생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민간의료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물리치료, 예방의학 분야, 치과 분야 등의 경우 혜택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3,500달러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2018년 11월 기준 핀란드의 법인세는 20%이다(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세금을 포함). 핀란드 조세 당국은 핀란드 내에서 거주하는 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며, 핀란드 내에서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모든 소득을 기업과 연계하여 과세한다. 납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핀란드 내 거주 및 활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핀란드에 등록된 회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와 별도로 핀란드 내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한 무역, 비즈니스, 농장 및 기타 분야에 포함되는 경우 Prepayment register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원천과세를 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부과하는 법인세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서 총 6등분 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세금납부 격차가 매우 크다. 개인소득세 이외에 지방자치세(우리나라의 주민세)가 총소득의 약 18~22%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 외 연금 등을 합치면 평균적인 개인 소득자는 약 30~4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부가가치세

2009년 8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대대적인 부가가치세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 시기 음식물 및 동물사료는 12%에서 13%로 인상됐고,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22%에서 13%로 인하한 바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표준 부가가치세가 23%에서 24%로 인상됐다. 이와 동시에 2017년 식료품 및 사료, 식당 및 케이터링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13%에서 14%로, 교통 및 숙박시설과 신문, 잡지, 제약, 행사입장료, TV라이선스, 문화행사, 스포츠 등도 기존의 9%에서 10%로 인상됐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수도 헬싱키의 2017년 주민세는 18.5%였으며, 2018년에 18%로 인하되었다.

외국인 투자자 적용 세율

- 법인세, 부가가치세: 핀란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핀란드 기업과 동일한 법인세(20%)와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다. 외국 기업도 핀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록이 된 기업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소득세: 핀란드에서 24개월 동안 근무하는 외국인(특별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에서 평균 5,800유로 이상의 월급을 받는)의 경우 평균 35%의 특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6개월 미만 근무자: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외국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을 때, 피고용인은 핀란드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본국에만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1년 이상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핀란드 기업에 고용되고 6개월 이하 파견되는 근무자는 급여의 3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1달 이하 근무자는 일 17유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공제액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택스 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근로자는 Finnish personal identity code를 지역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원천세는 최종 세금이며 핀란드에서 세금신고가 필요 없다.

○ 6개월 이상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로자는 고용주가 핀란드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핀란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회보장비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핀란드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각 지역별 관청에서 Finnish personal identity code를 발급받아야 한다. 핀란드에 세금을 신고할 때 타국에서의 소득 또한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이중과세는 유효한 양국 간의 세금 조약에 따라 방지된다. 6개월 이상 핀란드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요 직원은 누진세가 아닌 35%의 일괄적인 세금을 적용받는다. 이 기준은 핀란드 파견 중 월 급여가 5,800유로 이상이고 특별한 요건의 전문가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파견 근로자는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효력은 최대 48개월까지만 유효하다.

○ 영구적인 사업장: 핀란드의 협력 회사나 핀란드 지사를 세우는 것을 생략함으로써 고용주는 핀란드에 영구적인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할 수 없다. 핀란드 국세청은 고용주의 상태를 판단할 시,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 사업 기간과 사업형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핀란드 기업으로 간주되면, 고용주는 핀란드 사업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세를 납부하고 핀란드 사회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핀란드는 Euro system의 일원으로서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환관리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에서 감독한다. 이에 따라 외환 노출 및 위험을 ECB에서 총괄하며 핀란드 중앙은행은 금리 등 국내 자본만을 관할하고 있다.

외환관리는 핀란드 중앙은행이 총괄하나, 실제 업무는 시중 은행에 위임하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외환 업무를 총괄 감독할 뿐이다. 실제적인 외환거래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외환 매입은 수입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인보이스가 첨부되면 자유롭게 매입 가능하고, 국제외환 시장에 상장된 통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기업들의 해외자본 및 투자 이익, 모기업과 자회사 간 거래, 수출입, 무역 거래, 종업원 임금,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으며,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직접 핀란드 중앙은행에 외환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상의 목적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

외환 규제

- 과실 송금: 핀란드에서는 외국 기업이 과실 송금을 하는 경우 특별한 가이드 라인은 없다. 해당 기업이 납세의무를 (핀란드나 본국에서) 완료했다면 이익금 송금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다.
 - 관련 웹사이트: <https://www.suomenpankki.fi/>(핀란드 중앙은행)
- 결제 관행: 핀란드 수입상들은 샘플 등 소액인 경우,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하고, 일반 거래는 T/T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납품을 위해 원자재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송장을 받은 후 대금을 납부한다. 공장 설비 납품 등 금액이 큰 수입건은 신용장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핀란드는 금리가 낮은 대신 다양한 금융상품(팩토링 등)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사무용품의 리스, 물품대금 등을 할부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개인 간의 거래에 팩토링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 현지 금융조달 방법(대출): 외국 회사가 핀란드에서 법인 등 법적 권리를 가진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은 핀란드 회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핀란드 은행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18년 10월 기준 핀란드의 인구수는 5,521,533명이며, 당해 1월부터 10월까지 8,403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이민자로 인한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소비인구인 15~64세 인구는 전체 인구 중 62.5%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은 21.4%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20년 각각 61.2%와 22.6%를, 2050년에는 58.1%와 27.3%로 점차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원 : 핀란드 통계청>

소비 성향

1) 가격과 품질, 실용을 중시

핀란드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관심이 높으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구매 결정 시 브랜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원산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외양이나 치장에 크게 관심이 없는 성향으로 인해 고가 브랜드나 외모를 가꾸는 데 필요한 기타 제품의 시장은 작은 편이다. 어둡고 추운 겨울이 길고 드라이클리닝 비용이 높다는 점도 핀란드 사람들이 고가 의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핀란드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지출에는 비교적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이들은 차가 비쌀수록 안전도와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고화질 TV나 AV 시스템 구매에 관심이 많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편으로 구매 차량 사용 연한이 유럽에서 가장 긴 편이다. 핀란드 자동차 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 핀란드 승용차의 평균 자동차연수는 12.0년이다.

100유로 이상의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문이나 잡지 등의 리뷰를 참고해 구매를 결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심사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전자제품, 가구와 같이 품질이 중시되는 제품은 꼼꼼한 검토를 거쳐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젊은 층은 IKEA, TIGER 등 중저가 매장을 이용하거나 Amazon, Ebay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시장

핀란드는 가정용 전자제품을 비롯해 섬유, 플라스틱, 문구류 등 대부분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마케팅 활동에 따라 시장진입 가능성이 결정된다. 보수적인 소비자 성향으로 인해 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으로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3)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의 지역경제상황과 고용상태, 6개월 후의 지역경제, 고용 및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 등을 조사해 발표하며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을수록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8년 2월 25.8 이후 하락세이던 신뢰지수는 11월 18.3로 전월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상품 이미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의 품질 향상과 삼성 및 LG의 LCD 및 LED TV와 핸드폰 보급 확대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핀란드 내 인식은 상당히 높아진 편이다.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은 일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원거리로 인한 A/S 문제, 물류비용 증가 등의 요소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이후 한국 출장을 다녀오거나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핀란드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식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일부 바이어들은 한국 식품, 화장품 등 한국산 소비재에 수입을 희망하는 등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느긋함의 미학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된다. 비즈니스로 업체를 방문하거나 상담약속을 할 경우 최소 3~4주 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서 약속을 잡아야 한다. 상담 후 핀란드 바이어들이 제품을 검토한다고 하는 경우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바이어들을 재촉하지 않고 안부연락을 통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약속에 늦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꼭 전화로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2) 빠른 대응의 필요성

핀란드 바이어들이 견적이나 제품상세정보 등 요구하는 경우에는 빠른 답장이 필요하다.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이어에게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이다. 메일을 발송한 다음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3) 현지 휴가기간에는 방문 불가

핀란드에는 크게 4회의 휴가기간과 자녀들의 방학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피해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 여름휴가: 6월 3주차(하지 전후)부터 8월 2주차까지
- 겨울휴가: 12월 3주차부터 1월 첫주까지
- 스키방학: 매년 2월 3주차 전후
- 가을방학: 10월 3주차 전후

4) 신중한 계약의 중요성

핀란드에서는 어떤 계약이든지 한 번 체결이 되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처럼 여겨진다. 서류를 통해서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자주 요구할 경우 핀란드 회사로부터 신용을 잃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꼼꼼하게 모든 사항과 조건을 점검해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있다. 핀란드 기업들은 여간해서는 위험을 무릅 쓴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으며, 아주 긴 급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면 급속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우리가 그에 맞춰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선물

핀란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값비싼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다. 물론 비싸지 않은 민속소품의 경우 기념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한국의 전통 주류 또는 와인 선물이 좋으며 초콜렛이나 꽃다발도 좋다. 다만, 장례식에 주로 쓰이는 흰색과 노란색 꽃 그리고 화분에 담긴 꽃은 피해야 한다.

또한 핀란드의 대기업들은 사규를 통해 구매담당자들에게 거래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기 전에 담당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국세청에 따르면 3년 이내에 5,000유로 이상에 달하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 자발적으로 선물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식사

핀란드 업체에서는 외부 손님이 자사를 방문할 때 커피와 차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제공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방문객이 몇명인지 사전에 꼭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 모자람없이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핀란드인들이 커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특별하다. 그들은 세계에서 1인당 커피소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커피를 즐겨 마신다. 핀란드 사람들이 손님에게 커피를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대접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접대를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식사로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3) 복장

핀란드 비즈니스 복장은 다소 보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셔츠와 자켓을 입으며 여성은 블라우스와 치마 또는 바지를 갖춘 정장을 차려 입는다. 핀란드는 겨울과 여름 날씨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겨울에는 어두운 색상의 정장을 입으며 여름에는 밝은 색상의 정장을 입는 편이다.

4) 인사

핀란드에서는 미팅 시 주로 이름을 밝히며, 'OOO 대표, OOO 이사' 등 직급을 소개할 때 덧붙이지 않는다. 대체로 겸손함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학위(특히 박사인 경우)만은 예외이다. 핀란드인들은 학위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학위를 호칭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Mr 또는 Sir OOO보다는 Dr. (Doctor) OOO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더 좋다.

핀란드 기업에도 위계질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회사의 인간관계는 수평적이다. 핀란드에서는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긴 상대에 대해서는 존칭 대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문화이다. 직원들은 경영진을 보통 이름으로 호칭하며 경영진은 실무자의 제안과 조언을 귀담아 듣고 직원들과도 잘 어울린다. 외국인에게도 여러 번 만나게 될 경우 존칭 대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핀란드 회사의 분위기이다. 역으로 우리도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 핀란드인들은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경우,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으나 관계를 맺는 경우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악수 이상의 신체적 접촉을 잘 하지 않는다. 악수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한 손으로 힘있고 짧게 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등 다른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사업의 연장 '사우나'

상담을 시작하는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은 시간표 상에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이 길어져서 공식적인 업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사우나를 제안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술자리에서 사업 얘기가 오가지만 핀란드에서 사우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에서 최고의 손님 접대는 사우나이다. 사우나 안에서 핀란드 사람들은 훨씬 더 너그럽고 유머러스하며 인간적이다. 사우나를 한 후에 음주와 간단한 음식을 나누다 보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사업상의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6) 문화적 금기사항

- 역사적 발언: 핀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655년, 러시아로부터 108년간 지배를 받다가 1917년에 독립한 민족성이 강한 나라로 2017년 독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차츰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소국이라고 핀란드를 알보거나 주변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발언(예를 들어, 핀란드어가 러시아어랑 비슷하게 들린다 등)을 하면 상대방을 거슬리게 할 수 있으니 이런 발언은 자제하도록 한다.

○ 여성차별적 발언: 핀란드는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유럽 내에서는 최초로 여성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할 정도로 여성의 활동이 활발한 나라이다. 정치 외에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핀란드에서는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언행: 핀란드인은 일반적으로 정직하고 솔직하며 약속을 잘 지킨다. 자연히 상대방에게도 이와 같은 매너를 갖추기를 바란다. 핀란드에서는 말 한 마디가 갖는 의미가 크다. “Yes”는 반드시 Yes이고 “No”는 100% No이다. 상대방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거나 또 ‘No’ 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 언제나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중간에서 절대로 끊지 않아야 한다.

○ 제스처 및 의사표현: 손짓이나 몸 동작을 불필요하게 크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상담은 되도록 차분하면서도 자신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핀란드측 상공인들은 전문분야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대화 주제는 가급적 업무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사표현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표현이 명확할수록 협상에 더 유리하다. 특히 이메일 등 서신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동화기업, 테고필름 회사 '코트카밀 임프렉스(Kotkamills Imprex)' 인수

동화기업은 2017년 10월 하미나(Hamina)항 인근의 코트카(Kotka)시에 위치한 코트카밀 임프렉스를 345억 원에 인수했다. 코트카밀 임프렉스는 접착용도의 특수표면소재인 테고필름 생산업체로 유럽 시장점유율 2위인 업체이다. 연간 생산량은 1억 200만㎡이며 주요 시장은 핀란드와 러시아 등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동화기업은 테고필름 세계 2위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며 목재전문기업에서 화학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

2) 핀란드를 통한 인접국 수출 성공사례

핀란드의 내수시장은 작지만 KOTRA 무역관이 담당하는 인접국가 에스토니아에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넓히는 사례도 빈번하다.

2010년 초 지사화 사업에 가입한 C사는 건축자재를 제조·수출하는 건설한 중소기업이다. 해당 품목은 핀란드의 엄격한 건축 규제와 긴 겨울철 시공에 필요한 필수제품으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브랜드가 특별히 중요한 제품은 아니고 가격대비 품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중국 상품과의 가격경쟁이 매우 심한 품목이다.

C사는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지에도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으로 바이어의 요구에 맞춰 가격과 품질을 조정해주어 짧은 시간 내에 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바이어가 원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생산시설을 증설했고, 바이어는 C사를 방문해 이를 확인한 후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게 됐다.

이처럼 핀란드 바이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사화 가입 1년도 되지 않아 다수의 바이어들에게 주문을 받게 된 C사는 인접국으로의 진출기회도 잡게 됐다. 핀란드의 건설, 유통, 호텔업 등은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에 많이 진출한 부문인데, 에스토니아에 진출해 있는 핀란드 건설업체에서 에스토니아 지사에도 납품을 요청한 것이다. 지사화 가입 1년 만에 에스토니아에서도 상당한 제품 수주를 한 해당 사는 2018년에도 에스토니아 업체에 꾸준히 제품을 공급했다.

핀란드 자체의 내수시장은 작지만 핀란드 업체의 사업망을 이용해 적절히 인접국으로 사업을 확장한 좋은 예로서, 바이어나 에이전트 발굴 시 이웃국가에 얼마나 배급망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시장개척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입국방법

핀란드 입국 시 단순한 여행이 목적이 아닌 90일 이상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Residence permit)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핀란드에 관광이나 단순한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할 경우에는 90일까지 사증(이하 비자로 표기)이 필요 없으나 취업, 유학, 국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국 전 반드시 이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Residence Permit) 발급 신청은 온라인(enterfinland.fi)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비자 신청 후(수수료 450유로) 대한민국 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비자 발급기간은 6~8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자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www.migri.fi) 또는 주한 핀란드 대사관(www.finla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비행기 또는 배에서 내려 우선 짐을 찾고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원과 간단한 인터뷰로 절차는 모두 끝나지만, 입국 시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 세관검사대를 거친다. 때때로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므로 샘플 등의 물품에는 확실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1) 신고사항

- 면세수량 이상의 물품반입
- 수입제한 품목의 반입

판매목적 또는 기타 비즈니스용 물품 반입시는 적색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해서 세관 검사원의 검사,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녹색 화살표시 방향으로 이동해 신고하고 검사 절차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핀란드 세관은 여행자들이 핀란드 출입국 시에 10,000유로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신고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공지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신고 의무는 현금 소지에 대한 제약이나 금지사항은 아니다. EU 집행위는 2007년 6월 15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10,000유로 이상의 현금(여행자수표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을 포함하며 유로화 이외의 통화의 경우도 해당됨)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5개국의 경우에만 고액 현금 소지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전 EU 회원국으로 확대 실시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세관 영문 홈페이지(www.tulli.f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양식은 공항, 터미널 및 국경 초소 등에 비치돼 있으며 유럽연합 세무 및 세관부 홈페이지(www.ec.europa.eu)에서 출력할 수 있다.

2) 1인당 면세반입 허용 물품수량(2018년 11월 기준)

- 한국 등 EU 역외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22도 이상의 알코올 1리터 또는 22도 이하 알코올 2리터 또는 스파클링 와인 2리터 및 4리터의 저도수 와인(still wine)과 0.5도 이상의 맥주 16리터
 - 담배: 일반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 50개피 또는 250g 이하 담배제품
 - 기타 물품(향수, 커피, 차, 전자기기 등): 항공, 해상 입국 시 430유로 이하, 육로 입국 시 300유로 이하

- EU 역내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110리터의 맥주(0.5도 이상), 10리터의 1.2도 이상 알코올 음료, 22도 이하의 알코올 20리터, 90리터의 와인(스파클링 와인은 60리터)
 - 담배: 일반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 50개피 또는 250g이하 담배제품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 면세된다. 상기 면세물품은 여행객이 직접 반입 시 인정되며, 별도 화물로 송부 시, 서류 등을 통해 핀란드 세관에 면세해당 물품임을 직접 확인해야 면세가 가능하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358 9 251 5000
주소	Erottajankatu 7A 4th floor, 00130 Helsinki, Finland
홈페이지	https://fin.mofa.go.kr
비고	팩스: +358 9 251 50055 비상 연락처: +358 40 903 1013, +358 40 903 1012

○ 핀란드 한인과학기술인 협회

전화번호	+358 44 502 0024
홈페이지	https://www.koses.fi
비고	koses.finland@gmail.com

<자료원 :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헬싱키 무역관, 핀란드 한인과학기술인 협회>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핀란드 정부

전화번호	+358 29 516001
주소	Snellmaninkatu 1, 00023 Helsinki
홈페이지	https://valtioneuvosto.fi

○ 핀란드 의회

전화번호	+358 9 4321
주소	00102 Eduskunta
홈페이지	https://www.eduskunta.fi/

○ 핀란드 국세청

전화번호	+358 29 497 050
주소	Aleksanterinkatu 9, 4th floor

홈페이지	https://www.vero.fi
비고	각 지역별 사무실이 여러개 존재하므로 홈페이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실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번호도 문의사항 별로 상이하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 핀란드 은행

전화번호	+358 9 183 2626
주소	Snellmaninaukio 00101 Helsinki
홈페이지	https://www.suomenpankki.fi/en/

○ 핀란드 경제연구소(ETLA)

전화번호	+358 (09) 609 900
주소	Arkadiankatu 23 B
홈페이지	https://www.etla.fi/en/

○ 핀란드 경제고용부

전화번호	+358 29 516001
주소	Aleksanterinkatu 4, Helsinki
홈페이지	https://tem.fi/en/frontpage

○ 핀란드 관세청/세관

전화번호	+ 358 295 5200
주소	Pasilan virastokeskus, Opastinsilta 12, 00520 Helsinki
홈페이지	https://tulli.fi/en/frontpage

○ 비즈니스 핀란드 (Business Finland, 구 Tekes, Finpro)

전화번호	+358 29 50 55000
주소	Porkkalankatu 1, Helsinki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finland.fi/en/

○ 핀란드 경총(EK)

전화번호	+358 9 42020
주소	Etelaranta 10, 00130 Helsinki

홈페이지	https://ek.fi/en/
------	---

○ 핀란드 혁신 재단(Stira)

전화번호	+358 294 618 991
주소	Itamerenkatu 11-13 Helsinki
홈페이지	https://www.sitra.fi/en/#themes

○ 핀란드 국가소유 금융회사 (Finnvera)

전화번호	+358 29 460 2582
주소	Porkkalankatu 1 Helsinki
홈페이지	https://www.finnvera.fi/eng/

○ 핀란드 이민청

전화번호	+358 295 419 600
주소	Opastinsilta 12 A, Helsinki
홈페이지	https://migri.fi

○ 핀란드 방송국 Yle

전화번호	+358 9 14801
주소	Uutiskatu 5 Helsinki
홈페이지	https://yle.fi/

○ 핀란드 뉴스 에이전시(STT)

전화번호	+358 9 695 811
주소	Malminkatu 16 A Helsinki
홈페이지	https://stt.fi/

○ 영자신문(Helsinki Times)

홈페이지	http://www.helsinkitimes.fi/
------	---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88 EUR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8.55
2	식품	비빔밥	1인분	17.67
3	식품	쌀	1kg	1.98
4	식품	신라면	1봉지	2.28
5	음료	맥주	500ml	3.15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1.56
7	음료	우유	1L	1.05
8	의료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치료 제외, full cover, 1년	399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3.65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3.31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6.73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44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68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5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3.2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6.6
17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1개월	23.11
18	주택	아파트 월 임대료	침실 3개, 도심	2006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4186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

<자료원 :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체조사, 핀란드 중앙은행>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유로(Euro)로서 약칭은 EUR이며 1유로는 100센트이다. 지폐에는 5, 10, 20, 50, 100, 200, 500액권이 있으며 이 중에서 10, 20, 50유로 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화에는 1, 5, 10, 20, 50센트와 1, 2유로가 있다. 2002.1.1부터 유로화가 공용 화폐로 전면 도입, 사용되고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또는 거리의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며 환전 시 별도의 수수료가 있고 적용환율은 각각 다르다. 헬싱키에서 가장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곳은 스웨덴 환전 체인인 FOREX(Foreign Exchange Center, www.forex.fi)로 영수증이 있으면 한 번 환전한 금액의 잔액에 대해서는 환전수수료를 면제하고 교환해주고 있는데 헬싱키 중앙역 등 시내 몇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텔의 적용환율이 가장 비싸므로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미리 환전하거나 핀란드 은행 및 상기 FOREX 등에서 환전할 것을 추천한다.

핀란드의 경우 택시를 비롯한 햄버거 등 대부분의 상점에서 소액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므로 현금을 많이 지참할 필요가 없으며 환전한 현지화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이용

핀란드에서는 일부 노점상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거의 모든 장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50유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는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분증(여권 또는 핀란드 ID)을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핀란드는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한 나라이다. 특히 수도인 헬싱키에 위치한 대중교통은 헬싱키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다. 수도 헬싱키에는 지하철(Metro), 버스(Bus), 전차(Tram) 이렇게 3가지의 대중교통이 있는데 지하철은 1개 노선만 존재하며 구간 거리가 2~3분으로 매우 짧다.

버스는 크게 시내·시의 버스로 나뉘며 주어진 시간표에 맞춰 운행한다. 전차(Tram)는 한국과 달리 헬싱키에서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다. 핀란드에 처음 전기를 이용한 트램이 생긴 것은 1900년부터이며 2018년 기준으로 헬싱키 시내에 10개의 트램 노선이 있다.

헬싱키, 에스뵤, 반따 등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 가능하다. 헬싱키 지역 내의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HSL(www.hsl.fi)에서 제공하는 Journey Planner(www.reittipas.fi)는 모든 대중교통편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알려준다.

출발지와 목적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편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및 시간대별 정보와 지도상의 위치도 함께 알려준다.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시간표, 지도상의 운행경로와 정류장 위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www.hsl.fi 참조)

무임승차자 또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자 벌금은 80유로이며, 승차권 종류는 1일권(9유로)부터 7일권(36유로)까지 다양하게 있어 매번 표를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할인혜택이 있다. 정기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헬싱키 중앙역에 위치한 HSL에 직접 가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다. (www.hsl.fi 참조)

Helsinki Card 사용시 헬싱키, 에스뵈, 반따 등을 연결하는 버스, 전철, 전차, 기차 요금과 박물관 및 주요 관광지 입장료가 무료여서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이 카드는 호텔이나 편의점인 R-kioski, 기타 관광센터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일권, 2일권, 3일권 등이 있다. (성인 1일권 46유로)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EU회원국으로 발트3국을 포함한 유럽국가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핀어 및 유럽의 저가항공을 이용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을 저렴한 가격에 다녀올 수 있으며 쉥겐 국가들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항공기 이외에도 페리를 이용하여 스웨덴 스톡홀름, 에스토니아 탈린 등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핀란드 국유철도인 VR(www.vr.fi)을 이용하여 헬싱키에서 약 3시간 35분만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할 수 있다.

버스

헬싱키 시내 Single Ticket은 버스, 전철, 전차 모두 자판기로 구매 시 2.90유로이다. 하지만 그 외 인근 위성도시인 Espoo(에스뵈) 또는 Vantaa(반따)로 이동할 경우엔 5.50유로이다.

헬싱키를 포함한 모든 시내버스와 전철, 전차를 1시간 20분(티켓 표기된 만료시간) 내에 환승할 수 있는데 버스 이용 시 운전사에게 티켓의 최초 승차시간이 찍힌 승차권을 보여주고 승차한다.

핀란드 대중교통은 한국처럼 승차권을 따로 파는 부스나 창구가 없으므로 자동 판매기나 운전기사에게 직접 구매해야 한다. 단, 전철은 자동판매기에서 표를 사전에 구입해야 한다. Single Ticket(1회용 티켓)에는 유효구간과 시간이 표기 되어 있으므로 목적지 도착 시까지 잘 보관해야 하며 검표원의 요구 시 제시해야 한다.

택시

택시는 주요 호텔 및 택시 전용 정류소 등에 대기하고 있거나 때로는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화(+358 100 0700)로 부르면 5분 이내로 도착하기 때문에 방문지를 떠나기 전에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택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요금은 대개 5.90유로(오후 8시 이후 및 주말이나 공휴일 오후 4시 이후는 9.00유로)이다. 인원수 및 이동거리, 시간 등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3~4배 정도 비싸다.

탑승인원이 1~2인일 경우 Km당 1.55유로이고 2인 초과시에는 요금이 더욱 많이 부과되는 등 탑승시간과 인원수에 따라 요금이 변경돼 다소 복잡하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Yellow Line과 Vantaa Taxi 두 곳에서 합승 공항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중심지까지 요금은 1인당 20~30유로 정도로 일반택시보다 약간 저렴하다.

다. 통신

핸드폰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는 Telia, Sonera, Elisa, DNA 등의 통신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즉시 개통 가능하고 전화를 구매하는 곳에서 모든 절차를 알아준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사무소(마이스트라띠, www.maistraatti.fi)에서 거주등록을 마친 이후 이동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선불 유심은 R-kioski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요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핀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6~89살의 인터넷 사용률이 89%에 다다랐으며 핀란드 국민의 83%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핀란드에는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다.

헬싱키 시내의 특정 지역 및 호텔 등의 대형 시설에서는 무료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과 지하철, 헬싱키 캄삐(Kamppi) 쇼핑센터 등 여러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선 인터넷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인터넷 사용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한 달 무제한 선불카드(국내전화, 문자, 4G 무제한)은 29.9유로 정도이다.

라. 관광명소

○ 무민월드(Moomin World)

도시명	난탈리
주소	Tuulensuunkatu 14, Naantali, Finland
운영시간	6월 10일~8월 13일: 매일 10:00~18:00 8월 14일~8월 27일: 매일 12:00~18: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핀란드 서부의 작은 마을 난탈리에 위치해 있으며 핀란드의 국민 캐릭터인 무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주로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나 놀이가 행해진다. 여름에 개장을 하며 겨울에는 일부 기간만 운영한다.

○ 헬싱키 대성당(Helsinki Cathedral)

도시명	헬싱키
주소	Unioninkatu 29, Helsinki, Finland
운영시간	6~8월: 매일 09:00~24:00 9~5월: 매일 09:00~18: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p>헬싱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며 핀란드의 국교인 루터교의 총본산이다. 1830년에 착공해 1852년에 완공됐으며 예전에는 성 니콜라스(St. Nicholas)교회 또는 단순히 큰 교회라고 불렸다. 독일인 Karl Ludwig Engel이 설계한 신고전주의 왕궁 스타일의 이 건축물은 밝은 녹색 돔과 흰색의 주랑이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이 중앙 돔은 전방향에서 보이며 지붕 위에는 아연으로 만들어진 동상군(群)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예수와 12제자의 동상이 있다. 오늘날 핀란드 인구의 85%인 440만 명이 루터 교회의 신자로 등록돼 있는 만큼 이 곳에서는 각종 국가적인 종교행사가 거행되며 전시회,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등 대학과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겸한다. 원로원 광장에서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은 헬싱키 시민들의 휴식처로 날씨가 좋은 여름에는 이 계단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p> <p>대성당 앞에는 약 40만 개의 화강암이 깔려있는 원로원 광장이 있으며 중앙에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입상이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예배나 내부 행사가 있는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p>
-------------	--

○ 우스펜스키 사원(Uspenski Cathedral)

도시명	헬싱키
주소	Kanavakatu 1, Helsinki, Finland
운영시간	6~8월: 화~금 09:30~18:00, 토 10:00~15:00, 일 12:00~15:00 9~5월: 화~금 09:30~16:00, 토 10:00~15:00, 일 12:00~15: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관
명소소개	북유럽 최대의 러시아 정교회로 1860년 러시아 건축가 Aleksei Gornostaev에 의해 세워졌다. 벽면에는 템페라 화로 그리스도와 12제자가 그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종교 예술을 볼 수 있다.

○ 암석교회(The Rock Church)

도시명	헬싱키
주소	Lutherinkatu 3, Helsinki, Finland
운영시간	운영시간이 매일 상이하므로 홈페이지(https://www.helsinki.com/en/attractions/tempelaukio-church.html)에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휴무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명소소개	형제 건축가 Timo Suomalainen와 Tuomo Suomalainen가 함께 1969년에 지은 것으로 거대한 화강암 바위 내부를 다이내마이트로 폭파시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교회이다. 무너진 돌을 사용해 벽을 쌓고 지붕은 구리선과 유리로 만들었다. 천연 음향효과가 뛰어나서 콘서트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일요일 오후 2시 영어예배가 진행된다.
비고	입장료: 3유로(18세 이상)

○ 마켓광장(Market Square)

도시명	헬싱키
주소	Etelaranta, 00170 Helsinki
운영시간	주중 06:30~18:00, 토 16:00까지, 일 10:00~17: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헬싱키 대성당 남쪽에 위치한 헬싱키의 명물이다. 광장 앞은 항구에는 감자나 생선을 배에서 쌓아놓고 파는 상인들이 많으며 페리나 크루즈 선박도 마켓 광장 앞 항구에서 출발한다. 대체적으로 바가지도 없고 값을 깎는 관습도 없다.
------	---

○ 국립박물관(The National Museum)

도시명	헬싱키
주소	Mannerheimintie 34, Helsinki, Finland
운영시간	화~일 11: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관
명소소개	1902년 Eliel Saarinen, Armas Lindgren, Herman Gesellius 3명이 공동으로 설계한 것으로 중세교회 같은 외관이 인상적이다. 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핀란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한다. 매주 금요일 16:00부터 18:00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 수오멘린나 요새(Fortress of Suomenlinna)

도시명	헬싱키
주소	00190 Helsinki
운영시간	5~9월: 매일 10:00~18:00 10~4월: 매일 10:00~16: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748년 스웨덴 점령 하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건축된 해상 요새로 1808년 러시아-스웨덴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해상 요새인 수오멘린나 점령에 성공해 스웨덴군으로부터 요새를 양도받았다. 마켓 광장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면 15분 정도 소요되며 여름철 헬싱키 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 알바 알토 하우스 앤드 스튜디오(Alvar Aalto House and Studio)

도시명	헬싱키
주소	Tiilimäki 20, 00330 Helsinki
운영시간	화~토 오전 11:30~오후 12:3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명소소개	핀란드의 지폐에도 그려졌으며 그의 이름을 딴 대학교까지 존재할 정도로 유명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Alvar Aalto가 부인인 건축가 Aino Aalto와 건축부터 가구, 소품까지 공들여 완성한 생가이자 작업실이다. 방문 전 웹사이트에서 가이드 투어 예약이 필요하다. (https://www.alvaraalto.fi/en/location/studio-aalto/)

○ 핀란드야 홀(Finlandia Hall)

도시명	헬싱키
주소	Mannerheimintie 13 e, 00100 Helsinki, Finland

운영시간	월~금 09:00~19:00
휴무일	토, 일 휴무
명소소개	1971년 핀란드의 대표적 건축가 Alvar Alto가 설계한 컨벤션 홀로 각종 콘서트, 국제 회의가 개최되는 곳이며 헬싱키의 상징적 건물 중 하나이다. 멀리서 바라보는 전체적 건물 모습은 그랜드피아노를 닮았다고도 한다.

○ 시벨리우스 공원(Sibelius Park)

도시명	헬싱키
주소	Merikannontie, Helsinki, Finland
운영시간	연중 무휴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핀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으로 핀란드의 세계적인 음악가 Jean Sibelius을 추모해 세운 공원이다. 시벨리우스 기념물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24톤의 강철을 사용해 만들어진 시벨리우스 기념비(작가: Eila Hiltunen)는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후자는 파이프 오르간, 오로라 혹은 뾰족한 침엽수림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형상을 모델로 만든 것인지 작가가 밝히지 않았다. 기념물 바로 옆에는 시벨리우스 대형 두상이 있다.

<자료원 : 핀란드 관광청>

마. 식당

- 현지식당

○ 까펠리(Kappeli)

도시명	헬싱키
전화번호	+358 10 766 3880
주소	Etelaesplanadi 1 Helsinki
가격	22~39유로
영업시간	월~일 오전 10:00~오전 12:00
휴무일	예약 전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개	1867년에 생긴 1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카페 겸 레스토랑이다. 시벨리우스가 차를 마셨다고 하여 유명하며 카페와 레스토랑 공간이 분리돼 있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 에스플라나디 거리를 바라보며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다. 메뉴는 주로 핀란드식 요리로 구성되어 있다.

○ 고토(Koto)

도시명	헬싱키
전화번호	+358 9 646 080

주소	Lonnotintie 22
가격	런치: 11~22유로 디너: 15~30유로
영업시간	월~금 오전 11:00~오후 2:00, 오후 5:00~11:00 토 오후 01:00~11: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일식 전문점이며 내부 공간이 넓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비고	방문 전 예약하는 것이 좋다.

○ 살베(Salve)

도시명	헬싱키
전화번호	+358 10 766 4280
주소	Hietalahdenranta 5C
가격	25유로 전후
영업시간	월~금 오전 10:30~오후 11:00 토 12:00~24:00 일 12:00~23:00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현지식이다.
비고	방문 전 예약하는 것이 좋다. 웹사이트: https://www.raflaamo.fi/en/helsinki/salve

○ 엠파이어 피자(Empire Plaza)

도시명	헬싱키
전화번호	+358 9 328 0328
주소	Urho Kekkosen katu 1
가격	20유로 전후
영업시간	월~금 오전 10:30~오후 11:00 토 12:00~23:00 일 12:00~22:00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피자 전문점이다.

○ 로이스테(Loiste)

도시명	헬싱키
전화번호	+358 20 1234800
주소	Kaivokatu 3, 00100 Helsinki
가격	50유로 전후
영업시간	주중 11:30~24:00 토 12:00~24: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전망이 돋보이는 현지식 식당이다.

<자료원 : KOTRA 헬싱키 무역관>

- 한국식당

o 코리아 하우스(Korea House)

도시명	헬싱키
전화번호	+358 9 1357158
주소	Mariankatu 19
가격	15~20유로
영업시간	월 오전 11:00~오후 2:00, 오후 4:00~11:00 화 오전 11:00~오후 2:00, 오후 4:00~11:00 수 오전 11:00~오후 2:00, 오후 4:00~11:00 목 오전 11:00~오후 2:00, 오후 4:00~11:00 금 오전 11:00~오후 2:00, 오후 4:00~11:00 토 오후 12:00~11: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헬싱키 소재의 한식당이다.
비고	방문 전 예약하는 것이 좋다.

o 기와()

도시명	헬싱키
전화번호	+358 40 199 3223
주소	Bulevardi 19
가격	16~20유로
영업시간	월~금 오전 11:00~오후 22:00 토 오후 12:00~10: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헬싱키 소재의 비빔밥 전문 한식당이다.

비고	방문 전 예약하는 것이 좋다.
----	------------------

〈자료원 : KOTRA 헬싱키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크라운 플라자 헬싱키 호텔(Crowne Plaza Helsinki)

도시명	헬싱키
주소	Mannerheimintie 50
전화번호	+ 358 200 48 101
숙박료	싱글: 132유로 더블: 164유로
소개	헬싱키 시내 고급 호텔이다.
비고	숙박료는 수시 변동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식사 및 세금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 오리지널 소코스 호텔 헬싱키(Original Sokos Hotel Helsinki)

도시명	헬싱키
주소	Kluuvikatu 8
전화번호	+358 20 1234 600
숙박료	싱글: 215유로 더블: 270유로
소개	헬싱키 시내 고급 호텔이다.
비고	숙박료는 수시 변동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식사 및 세금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 호텔 헬카(Hotel Helka)

도시명	헬싱키
주소	Pohjoinen Rautatiekatu 23
전화번호	+358 9 613 580
숙박료	싱글: 68유로 더블: 88유로
소개	헬싱키 시내 중급 호텔이다.

비고	숙박료는 수시 변동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식사 및 세금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	---

○ 쿠물루스 카이사니에미 호텔(Cumulus Kasianiemi Hotel)

도시명	헬싱키
주소	Kaisaniemenkatu 7
전화번호	+358 9 172 881
숙박료	싱글: 124유로 더블: 149유로
소개	헬싱키 시내 중급 호텔이다.
비고	숙박료는 수시 변동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식사 및 세금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 호텔 캠프(Hotel Kamp)

도시명	헬싱키
주소	Pohoisplanadi 29
전화번호	+358 9 57 6111
숙박료	싱글: 290유로 더블: 290유로
소개	헬싱키 시내 최고급 호텔이다.
비고	숙박료는 수시 변동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식사 및 세금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 게스트하우스

○ 아카데미카 호스텔(Academica Hostel)

도시명	헬싱키
주소	Hietaniemenkatu14
전화번호	+358 9 1311 4334
숙박료	31유로부터
소개	헬싱키 시내에 위치한 호스텔이다.
비고	숙박료는 수시 변동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스타디온 호스텔(Stadion Hostel)

도시명	헬싱키
-----	-----

주소	Pohjoinen Stadiontie 3 B
전화번호	+357 9 477 8480
숙박료	22유로부터
소개	헬싱키 시내에 위치한 호텔이다.
비고	숙박료는 수시 변동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치안

치안상황

치안은 매우 좋은 편으로 2014년 기준 세계 치안 순위 발표에서 핀란드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이주민과 소말리아, 시리아 난민 등의 유입으로 일부 위험지역이 있으나 헬싱키 시내 변화가 등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도 개인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공공장소에서 부득이하게 타인과 밀착된 경우 범죄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어두워진 이후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나 불량 청소년들, 이민자들이 모여드는 중앙역 주변 또는 소르나이넨(Srminen)역 근처의 칼리오(Kallio) 지역은 위험할 수도 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2번으로 연결하면 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112)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사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당국에 신고한다. 민사책임이 따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운전 시에는 항상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 사유서 작성
- 방문 주소 : Erottajankatu7A, 4th 00130 Helsinki
- 전화 : +358 9 251 5000
- 긴급연락처 : +358 40 903 1021

○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양식 공관 비치)
- 사진 2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함, 흰색 바탕의 무배경, 흰색옷 착용 금지
- 현금 12.60유로
- 경찰에서 발행한 분실신고서(Police report): 가까운 경찰서 주소(The Pasila Police Station, Pasilanraito 11, 00240 Helsinki), 경찰서 갈 시간이 없을 경우 경찰에게 본인이 머무는 호텔 등의 장소로 와서 분실신고서 작성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해봐야 한다. 분실 신고서는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므로 분실신고서가 없어도 여권 발급은 가능하지만 분실신고서 없이 출국 시 출국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분실신고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 신분증: 사진이 나와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한 여권의 사본도 가능)
- 긴급여권 신청 시 필수 정보 중 하나인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기본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응급 전화번호(화재/범죄/의료)

핀란드의 응급 전화번호는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된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핀란드는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해 임차료도 비싼 편이다.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외교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의 비중을 비해 외국 외교관의 수가 많은 편으로 이들이 좋은 주택을 대부분 고가에 임차하고 있어 외국 비즈니스맨들의 경우 가격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도심에는 재개발 제한으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며 시설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떨어지는 편이나 주거용 아파트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임차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체증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헬싱키 인근의 에스뵤(Espoo) 또는 반따(Vantaa) 등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을 거주지로 정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이 지역들은 주거환경도 양호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취학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등하교거리와 교통편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을 임차하고 거주 등록이 완료되어야 핸드폰 신청 및 은행구좌 개설 등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2,200유로 전후의 임차료 수준에서 헬싱키 시내 80㎡ 전후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에서 집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사이트에는 개인 또는 부동산회사에서 올린 임대광고가 함께 올라와 있어 집의 도면 및 약도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핀란드 현지어로 되어 있고 임차인은 부동산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임대광고를 올린 부동산 회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아파트들은 주차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오므로 매일 아침 차의 눈을 치우지 않으려면 실내주차장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 및 집 임대 또는 구매를 결정한 이후에는 계약 전에 주택 상황을 일일이 점검해 수리 등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본인 과실이 아님을 미리 소유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임차주택은 통상 1~2개월분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데 해당 금액은 실제 보증금으로 은행에서 맡고 있으며 계약 만료 시 양측의 서명이 있어야만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인터넷으로 속소를 구하는 경우 사기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국 후 직접 집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미리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sub-rent의 경우 열쇠 분실 시 재발급 비용 별도 납부와 더불어 속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비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본인 명의로 계약된 방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만약 sub-rent로 계약을 하게 될 시에는 그 집이 해당 주인 소유가 맞는지 본 계약서(소유 증명) 및 ID 등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열쇠를 사용하고 있어서 열쇠 분실시 재발급을 위해 추가비용이 생긴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열쇠 분실 시 긴급 서비스를 보안업체에 위탁한다. 집에 열쇠를 두고 온 경우 보안업체가 비상열쇠를 가져다주며 통상 4~50유로의 비용이 소요된다.

만약 헬싱키 지역에 유학 중이라면 비정부기관인 HOAS(www.hoas.fi)에 학생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학생의 경우에는 AYY(www.ayy.fi)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알토대학 학생회 소유의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 www.oikotie.fi
- www.etuhovi.com
- www.vuokraovi.com

- www.hoas.fi(학생아파트)
- www.ayy.fi(학생아파트)
- www.forenom.fi(서비스 아파트)

핀란드 내에 주거지가 정해지면 지역별 주민등록사무소를 방문해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여타 유럽과 달리 외국인 체류증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되고 비용은 무료이다. 거주지 등록은 1년 이내 체류일 경우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에 한해 사회보장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2매)가 필요하다. 거주지 등록 확인서는 신청 후 약 3주 이내에 우편으로 발급해 준다. 거주지 등록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받으며 각종 행정 편의를 누릴 수 있다.

- 헬싱키 시내 주민등록사무소(Maistraati, Local Register Office)
 - 주소: Albertinkatu 25, 00181 Helsinki, Finland
 - 전화: +358 29 55 39391

전화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는 Telia, Sonera, Elisa, DNA 등의 통신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즉시 개통 가능하고 전화를 구매하는 곳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준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사무소(마이스트라티, www.maistraatti.fi)에서 거주등록을 마친 이후 이동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만약 핀란드를 단기간으로 방문하는 경우라면 선불 USIM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한국 통신사들의 자동 로밍 서비스도 가능하다. 선불 USIM카드는 도시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R-kioski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 국내전화: 유선 전화의 국내전화 요금은 통신 사업자마다 다르나 대표적인 통신사인 텔리아 소네라의 경우 3분에 0.24유로, 국제전화 요금은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경우 3분에 3.6유로 정도이다.

- 국제전화

-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통화를 원할 경우 국제전화 이용번호(00), 한국 국가번호(82), 지역번호(서울의 경우 "2") 다음에 수신자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551-4108로 전화를 할 경우에는 00-82-2-551-4108 순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하는 국제전화 이용번호로 9977, 99500, 99588 등이 있는데 가장 이용료가 저렴한 번호는 99588이지만 일반전화기 사용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운영하므로 관광객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 우리나라의 KT 등이 핀란드 전화국과 계약에 의해 1997년 1월 1일부터 콜렉트 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핀란드 방문객들은 핀란드 전화국 이용요금의 약 절반 수준으로 통화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핀란드로 전화를 할 경우에는 국제전화 이용번호를 돌린 후 핀란드 국가번호(358)와 지역번호(헬싱키의 경우 "9")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일부 대기업 등은 별도의 지역번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전화번호가 4자리에서 8자리 또는 9자리까지 다양하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전압/플러그

230V, 5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전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Hz가 차이가 나서 일부 모터제품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전기 플러그는 우리나라 220V용 플러그와 모양이 같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식수

핀란드의 수도물 수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따라서 수도물 음용이 보편적이다. 주방, 화장실 등 장소에 상관없이 물병에 물을 받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수도물 음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마트에서 생수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1) 신차

각 브랜드별 홈페이지에서 가격 확인 또는 견적 요청이 가능하며 브랜드별 딜러들이 전시장 운영 및 판매를 진행한다. 주요 딜러는 다음과 같다.

- Metroauto(www.metroauto.fi): 현대, 도요타, 오펔, 피아트 등
- Deltaauto(www.deltaauto.fi): 기아, 오펔 등
- Veho(www.veho.fi): 벤츠, 시트로엥, 푸조, 포드, 혼다, 스코다 등
- Autokeskus(www.autokeskus.fi): BMW, 시트로엥, 푸조, 포드, 닛산, 스코다 등
- Lansiauto(www.lansiauto.fi): 아우디, 혼다, 벤츠, 닛산, 오펔, 푸조, 폴크스바겐 등

2) 중고차

주요 딜러들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중고차도 판매하고 있으며 Nettiauto(www.nettiauto.com)에서 중고차 검색이 가능하다.

차량가격

핀란드의 경우 자동차 세금은 탄소 배기량에 따라 12.2~48.8%까지 차등 부과된다. 우리나라 i40의 구입가격이 약 36,990유로(세금 포함)이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연리는 7~8% 정도된다. 단, 중고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한국만큼 빠르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인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입국 후 2년까지는 면허증 없이도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렌트카 회사를 이용할 수 없다. 한국인은 핀란드 주민번호를 발급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2년 이내에 한국 면허증을 핀란드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사진 2매와 신체검사 결과, 핀란드에서 6개월 간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 2명의 추천서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문번역 공증을 받은 한국 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면허증 발급과 교환은 핀란드 교통안전국(Tarif)의 서비스 공급업체인 Ajovarma Oy's에서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Ajovarma Oy's 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1인당 40유로이며, 발급기간은 약 3주가 소요된다. 운전면허가 발급되면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 헬싱키 현지 면허 신청 및 발급 기관

- 주소: Ajovarma Helsinki-Herttoniemi, Lmmittjkatu 2b, 00880 Helsinki, Finland/ Ajovarma Helsinki-east route, Itvyl 47, 00950 Helsinki, Finland

- 전화: +358 75 323 9808 / +358 75 323 9811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Nordea(노르디아)은행: 북유럽 지역 최대 은행. 지점이 가장 많이 존재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영어로 제공되어 사용이 편리하다.
- op은행: 은행 중 디지털 서비스가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되는 은행이며 젊은층에서의 사용이 높다.
- Danske은행: 북유럽 내 다수의 지점이 존재하여 사용이 편리하다.

계좌 개설방법

공공요금은 통상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기 때문에 은행 구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여권, 노동허가증, 재직증명서 등을 가져가야 한다. 노동허가증을 신청 중인 경우이면 이를 회사 공문으로 설명하면 추후 보완 조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좌 개설 희망 은행과 6개월 이상 거래한 보증인 1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초 구좌 개설 시(Current Account의 경우) 은행별로 상이하지만 소액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대형 은행들은 한국에 자기 은행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의 경우 노동허가증 없이도 구좌를 개설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구좌를 개설할 때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은행의 단말기를 통해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 이체할 경우 통상 건당 6유로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은행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12센트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뱅킹은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면 대체로 이체 수수료는 면제가 된다.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출입금 확인도 가능하며, 희망 시 1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잔고 및 출입금 확인서(bank statement)가 송부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The English School

도시명	헬싱키
커리큘럼	영어와 핀란드어로 진행되는 영국식 사립학교이다.
학비	연 673유로(등록비 50유로 별도)
홈페이지	https://www.engs.fi/
비고	영국식 사립학교이며 신청은 english.school@engs.fi로 신청서를 발송하면 된다. (등록비 20유로)

◦ International School of Helsinki(ISH)

도시명	헬싱키, Selkamerenkatu 11, 00180, Finland
-----	--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rimary Years Programme(PYP): 3세부터 10~11세(5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수학,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미술, 체육, 음악, IT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운다. ○ The Middle Years Programme (MYP): 11세부터 15세 학생(6~10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과목 간 융합적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 수업과 사회, 과학, 수학, 미술, 음악, 체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High School Diploma (HSDP) and the IBO Diploma (DP) Programmes: 11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은 학위 프로그램을 밟는다. 학생들은 시험성적 외에도 그룹워크, 수업 참여도 등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되며 한국의 수능과 비슷하게 매년 5월(주로 5월 1일부터 3번째 주까지)에 IB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은 IB시험 전 2주 동안 시험 공부할 시간을 갖는다. 사전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 시험 결과는 6개 대학교까지 수수료 없이 전송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성적 공개일자는 7월 6일이다. 졸업식은 매년 6월 첫째주 토요일에 Ruoholahti Conservatory에서 열린다.
학비	<p>연간 학비는 다음과 같다. (등록비 3,150유로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12,067유로 - 1~5학년: 13,341유로 - 6~8학년: 14,143유로 - 9~10학년: 14,933유로 - 11~12학년: 16,121유로
홈페이지	https://www.ishelsinki.fi/
비고	미국식 사립학교로 주재원 자녀들이 주로 취학한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비 350유로)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Espoo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에스뵘
커리큘럼	EIS는 1~6학년까지 기본 교육을, 7~9학년까지는 Middle Years Programme(MYP)을 제공하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학비	없음
홈페이지	http://www.espool.fi/espoolinternationalschool
비고	헬싱키 인근 에스뵘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에 개교했다. 현지인이 주로 재학하고 있으며 핀란드 교육혁명을 주제로 한국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불편한 편이다.

○ Ressu Comprehensive School

도시명	헬싱키
커리큘럼	헬싱키에서 가장 유명한 공립학교 중 하나이다. 1~4학년까지는 Primary Years Programme(PYP)를, 5~9학년까지는 Middle Years Programme(MYP) 수업을 듣는다. 9학년 때에는 Personal Project가 있어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계획, 실행 및 발표한다.
학비	없음
홈페이지	https://www.hel.fi/peruskoulut/fi/koulut/ressun-peruskoulu

비고	공립학교의 입학시험은 매년 8월 1일에 치뤄진다. 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5.31(수)까지 mira.teronen@hel.fi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	--

○ Maunula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도시명	헬싱키
커리큘럼	7~9학년 학생 대상 학생들은 수학, 스포츠 또는 국제화 수업(international class)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학, 스포츠 수업은 주로 핀란드어, 국제화 수업은 주로 영어로 진행된다. 10~12학년 학생들은 Maunula Upper Secondary School(Maunulan yhteiskoulun lukio) 또는 Helsinki School of Mathematics(Helsingin matematiikkalukio) 수업을 듣는다. 전자는 핀란드 교과 과정을 따르며 후자는 수학과 과학 특화 수업을 제공한다.
학비	없음
홈페이지	https://www.mayk.fi/en/
비고	외지인이 많은 학교이며 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7.27(목)까지 mira.teronen@hel.fi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 Mehilainen

도시명	핀란드 전국에 분포하는 병원 체인
주소	Pohjoinen Hesperiankatu 17 C, 00260 Helsinki(헬싱키 시내)
전화번호	+358 10 414 0200
진료과목	심혈관질환, 치과, 산부인과, 소아과, 물리치료, 라식 등 대부분의 과목을 진료한다.

○ HUS (Helsinki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헬싱키, 에스포, 반타 지역에 17개 병원 분포
주소	Haartmaninkatu 4, 00290 Helsinki
전화번호	+358 9 471 72432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안과, 피부과, 암치료 등 대부분의 과목을 진료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다.

<자료원 : KOTRA 헬싱키 무역관,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스톡만 백화점(Stockmann)

주소	Aleksanterinkatu 52, 00100 Helsinki
홈페이지	https://www.stockmann.com/
비고	북유럽 최대이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백화점이며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앙역으로부터 남쪽으로 400m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 식재료 및 핀란드 특산물을 구매하기 용이하다.

○ 캄삐 쇼핑센터(Kamppi Shopping Centre)

주소	Urho Kekkosen katu 1, 00100 Helsinki
홈페이지	https://kamppi.fi/en/stores-and-services
비고	헬싱키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 쇼핑몰이다. 우리나라의 코엑스처럼 다양한 상점이 모여있으며 5층에는 파인다이닝 및 바도 위치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헬싱키 무역관 >

- 식품점

○ Vi voan

도시명	헬싱키
주소	Hmeentie 3, 00530 Helsinki
취급 식료품	아시아 마켓이며 한국 라면, 고추장, 된장, 각종 소스, 과자 등이 구비되어 있다. 한국 식재료 외에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자료원 : KOTRA 헬싱키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Makelanrinne Swimming Hall

도시명	헬싱키
주소	Makelankatu 49, 00550 Helsinki
홈페이지	https://www.urheiluhallit.fi/fi/paikat/makelanrinne.html
소개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원 : 체육관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New years Day)	2019-01-01	신정
주현절(Ephiphany)	2019-01-06	

성금요일(Good Friday)	2019-04-19	
부활절(Easter)	2019-04-21	Easter Sunday
부활절(Easter)	2019-04-22	Easter Monday
노동절(Vappu, May Day)	2019-05-01	
예수 승천일(Ascension Day)	2019-05-30	
하지제(Midsummer Eve)	2019-06-22	하지제 전날(6월 21일)은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점과 회사가 휴일인 경우가 많다.
성인의 날(All Saints Day)	2019-11-02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2019-12-06	
성탄절(Christmas Eve)	2019-12-25	성탄절 전날은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점과 회사가 휴일인 경우가 많다.
Second Day of Christmas (Boxin Day)	2019-12-26	

<자료원 :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헬싱키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Salomonkatu 17 A, 3rd Floor D, 00100 Helsinki, Finland
- 전화: +358 9 682 9490
- 이메일: helsinki@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대중교통 이용시: 공항에서는 공항버스(Finnair City Bus, 6.60유로), 시내버스(615, 5.50유로), 공항철도(I 또는 P라인, 5.5유로)를 이용하여 30~40분 후에 종점인 중앙역(Central Railway Station; Rautatientori)에서 하차한다. 중앙역에 내리면 빨간 표지판의 지하철 표시(M)를 따라 루오홀라흐티(Ruoholahti)행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 뒤인 캄삐(Kamppi)역에서 내린다. 캄삐역에서 루네르베르킨카투(Runerberginkatu) 방면 출구로 나오면 맥도날드가 1층에 소재하고 있는 건너편 건물(Autotalo) 3층에 KOTRA 헬싱키 무역관이 위치해 있다.

○ 도보 이동 시: 중앙역에서 도보로 찾아 오는 경우 중앙역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직진하면 소코스 백화점(SOKOS)이 보이고 앞으로 도로가 나오는데, 이를 건너 계속 직진하면 캄삐(Kamppi) 쇼핑센터가 나온다. 쇼핑센터 좌측으로 계속 직진 시 피자헛이 보이고 이후 보이는 맥도날드 건물 3층에 KOTRA 헬싱키 무역관이 있다.

○ 택시 이용 시: KOTRA 헬싱키 무역관의 주소인 Salomonkatu 17A를 운전사에게 알려주면 되고 요금은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약 45유로(2인 기준)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